『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3호 2013년 9월 53～69면
Seoul Law Journal Vol. 54 No. 3 September 2013. pp. 53～69

靑雲 安京煥 敎授 年譜·論著 目錄

Ⅰ. 年 譜

본 적 : 경남 밀양(密陽)시 부북(府北)면 청운(靑雲)리 631
생년월일 : 1948년 7월 20일
부 : 安秉駿 모 : 趙瓊姬
처 : 朴淑蓮 자녀 : 安在瑞, 安在仁

[학력]

1963. 2	밀양 중학교 졸업
1966. 2	부산고등학교 졸업
1970.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73. 3～1975. 1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재학
1982. 5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1985. 12	미국 Santa Clara Law School, J.D.

[수상]

2004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여성권익 향상 '디딤돌'상
2005	Distinguished Alumni Achievement Award (Santa Clara University Law School)
2008	청조인 대상(사회봉사부문)
2012	대한민국 법률대상(인권부문)

[학내경력]

1987. 3～1989.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1989. 4～1993.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1993. 4～1998.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1998. 4～2009.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9. 3～2013. 8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2013. 9～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988. 6～1990. 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담당학장보
1991. 9～1993. 9	국제비교법연구실장
1992. 9～1995. 3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장
1995. 3～1996. 6	서울대학교 기획실장
1997. 4～2012. 4	미국학연구소 운영위원
1998. 4～2000. 4	서울대학교 기획위원
1998. 4～2009. 9	박물관운영위원
1998. 7～1999. 9	법학연구소 연구부장
1999	정시입학 논술고사 출제위원장
1999. 2～1999. 12	연구중심대학자문 추진위원회 위원장
1999. 5～2001. 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부장
2000	수시입학 지필고사 출제위원장
2000. 4～2004. 4	미국학연구소 연구위원
2001. 4～2003. 4	언론정보연구소 연구위원
2002. 6～2004. 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2003. 8～2006. 7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법의 발전 교육연구단장
2005. 11～2007. 11	법학연구소 연구위원
2006. 7～2006. 10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수립위원회 위원장
2006. 7～2008. 6	통일연구소 연구위원
2010. 2～2012. 1	법학연구소 연구위원
2010. 5～2012. 5	출판문화원 기획위원
2012. 5～2013. 8	법학연구소 연구위원

[학외경력]

1. 국내활동

1978～1980	(주)선경 기획조정실 과장
1987～199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
1993～1996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회지『시민과 변호사』창립 편집위원
1994～2000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운영위원장
1995. 5～1996. 4	경찰청 치안연구소 지도위원
1996～1997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
1998. 9～2000. 8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임위원
1999	학술진흥재단 과제선정위원
1999～2001	문화관광부 우수도서 선정위원
1999～2001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사
1999. 9～2001. 8	학술진흥재단 학술기획위원
2000～2001	교육부 위촉 전국 규모 학술지(법학) 평가위원회 위원장
2000～2001	청소년보호위원회 자문위원
2000. 5～2003. 4	학술진흥재단 학술자문위원
2001	한국법학원 학술대상심사위원회 위원
2001～2002	제8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2002～2003	전국법과대학학장연합회 회장
2002. 5～2003. 5	학술진흥재단 자문법률단 위원
2002～2006	아름다운 재단 이사
2003. 5～2004. 9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2004. 5～2005. 5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2004. 5～2005. 4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자율화 및 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2004. 6～2006. 10	예술의 전당 이사
2005. 8～2006. 2	검찰 감찰위원
2005. 12～2006. 4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청산위원회 위원
2006. 10～2009. 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2013～현재	공익법률재단 공감 이사장

2. 해외활동

1984～1987	미국 워싱턴 D.C.,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1990～1991	Visiting Scholar, London School of Economics
1996～1997	Visiting Professor of Law,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School of Law
1999～2002	BOAO 포럼 창립준비위원
2003～2004	Asian Association of National Law Schools (현 ASLI: Asian Law Institute) Founding Board of Governors
2003～2006	Advising Jurist, Asia-Pacific Forum for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es
2004～현재	Editorial Board Advisors,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2005. 1～2005. 8	Distinguished Visiting Professor of Law, Santa Clara Law School
2008	Chairperson, Asia-Pacific Forum for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es
2008. 3～2009. 7	Deputy Chairperson, Inter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 for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es
2010～현재	Advisor, Forum Asia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2010～현재	Editorial Board Advisors, Taiwan Human Rights Journal
2013. 7	Chief Advisor, International Fact Finding Mission On the Freedom of Assembly in the Context of Election, Malaysia

3. 해외강의 및 강연

1987	UC Davis Law School (미국)
1989	UC Hastings College of Law (미국)
1989	Goldengate University Law School (미국)
1991	The University of Coimbra (Portugal) (포르투갈)
1991	Yanbian University (중국), Tuebingen University (독일)
1993, 2009	Stanford Law School (미국)
1995	Hitotsubashi University (일본)
1997	Washington University (미국)

1998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호주)
2000	University of Indonesia (인도네시아)
2000, 2001	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 (캄보디아)
2001	Peking University (중국)
2001	University of Colombo (스리랑카)
2001, 2002	Nanjing Normal University (중국)
2002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중국)
2002	Chulalongkorn University (태국)
2003	University of Philippines (필리핀)
2003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미국)
2003	Duke University Law School (미국)
2005	University of Chicago (미국)
2005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캐나다)
2005	University of Hawaii (미국)
2006	UNAM National Autonomous University of Mexico (멕시코)
2006, 2010, 2011	National University of Taiwan (대만)
2010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미국)
2011	Arellano University (필리핀)
2011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대만)
2011	Soochow University (대만)

II. 論著 目錄

[단행본]

1. 저서

- 『미국법의 이론적 조명: 윌리엄 더글라스의 법사상』, 고시계사, 1986.
- 『법은 사랑처럼』, 대학출판사, 1989.
- 『판례교재 헌법 II』(김철수 공저), 법문사, 1992.
- 『법이라는 이름의 전차』, 교육과학사, 1992.
- 『이야기 한마당』, 철학과 현실사, 1994.

- 『법과 문학 사이』, 도서출판 까치, 1995.
- 『基本權의 槪念과 範圍에 관한 硏究』(성낙인, 김형성 공저), 헌법재판소, 1995.
-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는 없다』, 철학과 현실사, 1996.
- 『셰익스피어, 섹스어필: 안경환의 법과 문학』, 프레스21, 2000.
-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을 향해 날다』, 효형출판, 2001.
- 『사랑과 사상의 거리재기』, 철학과 현실사, 2003.
-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기본용어』, 국가인권위원회, 2004.
-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한인섭 공저), 집문당, 2005.
- 『법・정치와 현실』(김주성, 서병훈, 김종철, 김도균 공저), 나남, 2005.
- 『조영래 평전』, 도서출판 강, 2006.
-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 효형출판, 2007.
- 『법과 사회와 인권』, 돌베게, 2009.
- 『안경환의 시대유감』, 라이프맵, 2012.
- 『법, 셰익스피어를 입다』,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좌우지간 인권이다』, 살림터, 2012.
- 『황용주: 그와 박정희의 시대』, 까치글방, 2013.

2. 역서

- 러셀 W. 갤로웨이, 『법은 누구편인가』(*The Rich and the Poor in Supreme Court History*), 고시계, 1985; 개정판(교육과학사, 1992).
- 로렌스 M. 프리드만, 『미국법입문』(*American Law: Introduction*), 대한교과서, 1987.
- 윌리엄 더글라스, 『반대의 자유』(*Points of Rebellion*), 대학출판사, 1988.
- 로렌스 M. 프리드만, 『미국법역사』(*A History of American Law*), 대한교과서, 1988.
- 조엘 조셉, 『재앙의 월요일: 사상 최악의 판결들』, 교육과학사, 1992.
- 알버트 다이시, 『헌법학입문』(김종철 공역), 경세원, 1993.
- 봅 우드워드 외, 『판사가 나라를 잡는다』(*The Brethren*), 철학과 현실사, 1995.
- 봅 우드워드 외, 『판사가 나라를 살린다』, 철학과 현실사, 1996.
- 로렌스 M. 프리드만, 『미국법의 역사(제3판)』, 청림출판사, 2007.
- 봅 우드워드 외, 『지혜의 아홉기둥』, 라이프맵, 2009.
- 조지 오웰, 『동물농장』(*Animal Farm*), 홍익출판사, 2013.

3. 편집저작물

- 『옥가락지 둥글듯이』, 화성사, 1988.
- 『뮤즈가 디케에게: 시인이 본 법』, 교육과학사, 1994.
- 『미국헌법이론논문집』, 1999.
- 『미국헌법의 이론적 탐구(1)・(2)』,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1999.
- 『영연방법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 『미국헌법 핸드북』, 서울대학교 영미법연구실, 2000.
- 『미국헌법이론논문집 2』, 2000.
- 『영연방법이론논문집: 共存의智慧』, 2000.
- 『양심적 병역거부』(장복희 공편), 사람생각, 2001.
- 『플라톤의 법사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01.
- 『집회와 시위의 자유』(정인섭 공편), 사람생각, 2003.
- 『뒤뚱거리는 시소 위의 균형잡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11.
- 『우리 여기, 인권으로 만나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12.
- 『열린 생각, 열린 인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12.

[학술논문]

1. 정기학술지 게재논문

- “미국연방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고시계』, 351호(1985), 75-96면.
- “윌리엄 더글라스 판사와 표현의 자유”, 『대한변호사협회지』, 119호(1986. 7), 37-52면.
- “Alien’s Basic Human Rights Under the United States’ Law”, 『저스티스』, 제19권(1986. 12), 153-182면.
- “미국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고시계』, 제32권 5호(1987), 163-178면.
- “사법심사와 정치적 문제(지나친 사법심사는 비사법적일 수 있다)”, 『저스티스』, 제21권(1988), 139-145면.
- “학생징계의 법리”, 『고시계』, 제34권 1호(1988), 184-196면.
- “적정법관수 산정을 위한 소론”, 『서울대학교 법학』, 제29권 1호(1988), 23-39면.
- “법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29권 2호(1988), 20-38면.

- “미국의 프라이버시보호법제에 관한 연구”,『통신정책연구』, 제4권(1988), 6-21면.
- “소비자금융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법학』, 제29권 3・4호(1988), 186-205면.
- “미술저작물 저작자의 추급권”,『저작권』, 4호(1988 가을호), 30-31면.
- “Too Much Judicial Review Could be Injudicious” (Jesse Choper 저),『저스티스』, 제21권(1988), 139-145면(번역논문).
- “미국의 법학교육”,『사법행정』, 제29권 2호(1988), 115-117면.
- “공연・전시에 있어서의 新・舊法 差異點”,『저작권』, 창간호(1988. 5), 16-19면.
- “컴퓨터 안전과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연구”,『한국과학재단』(1988. 11).
- “표현의 자유와 사전제한의 법리: 미국을 중심으로”,『인권과 정의』, 153호(1989), 17-25면.
- “Miranda 판결의 현대적 의의”,『저스티스』, 제22권(1989), 92-115면.
- “악법개폐와 국가보안법”,『현실과 대안』, 창간호(1989), 1-12면.
- “사법제도의 개선책”,『사상과 정책』, 22호(1989), 207-220면.
- “자유주의와 미국헌법”,『미국학』, 제13집(1990), 15-26면.
- “미국헌법의 구도”,『서울대학교 법학』, 제31권 1・2호(1990), 113-132면.
- “소수자보호를 위한 법리”,『법과 사회』, 제2호(1990. 3), 114-130면.
- “구미의 정당제도”,『인권과 정의』, 164호(1990. 4), 35-45면.
- “헌법재판의 정치적 성격과 그 의의”,『고시행정』, 제15권(1990. 7), 115-126면.
- “영국법과 미국법의 비교연구(1): 법과대학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서울대학교 법학』, 제31권 3・4호(1990. 12), 209-221면.
- “영국법과 미국법의 비교연구(2): 법관”,『서울대학교 법학』, 제32권 1・2호(1991), 78-92면.
- “영국법과 미국법의 비교연구(3): 변호사제도”,『서울대학교 법학』, 제32권 3・4호(1991), 125-137면.
- “의원내각제와 정치적 소수자 – 영국의 경우”,『법과 사회』, 제4권 1호(1991), 156-170면.
- “民主法治主義의實現化를 위한 適法節次”,『법제연구』, 3호(1992), 89-104면.
- “법과대학원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책”,『서울대학교 법학』, 제33권 1호(1992), 22-41면.
- “그리스 고전에 나타난 재판”,『법과 사회』, 제7호(1992), 265-284면.
- “영국법과 미국법의 비교연구(4): 법원의 정립과 적용”,『서울대학교 법학』,

제33권 2호(1992), 221-233면.

- “現行 著作權 紛爭調停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저작권관계 자료집』, 11輯(1992. 12), 98-102면.
- “프란츠 카프카의 법(1)”, 『저스티스』, 제25권 2호(1992. 12), 7-19면.
- “미국헌법이 한국헌법에 미친 영향”, 『미국학』, 제16집(1993), 1-30면.
- “미국헌법과 저작권”, 『저작권』, 22호(1993 여름호), 58-65면.
- “영연방법제에 관한 연구 총론(1)”, 『서울대학교 법학』, 제34권 2호(1993), 248-265면.
- “영연방법제에 관한 연구 총론(2)”, 『서울대학교 법학』, 제34권 3호(1993), 130-158면.
- “법률가를 위한 문학(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지 창간호(1993. 1), 241-256면.
- “프란츠 카프카의 법(2)”, 『저스티스』, 제26권 1호(1993. 7), 38-47면.
- “억압된 사회에서의 법률가의 역할”, 『문학과 사회』, 제22권(1993 여름), 709-717면.
- “미국헌법과 저작권(1)”, 『저작권』, 22호(1993 여름호).
- “미국헌법과 저작권(2)”, 『저작권』, 23호(1993 가을호).
- “수정헌법 제1조와 저작권”, 『저작권』, 24호(1993 겨울호), 43-49면.
- “대학원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法과 社會』, 9호(1994. 5), 48-62면.
- “문학작품과 음란물의 한계”, 『法과 社會』, 9호(1994. 5), 235-251면.
- “워렌법원: 개혁의 수단으로서의 헌법판결(I)” (Archibold Cox 저), 『서울대학교 법학』, 제35권 1호(1994. 5), 361-394면(번역논문).
- “미국연방대법원판결에 나타난 서양고전작품”, 『저스티스』, 제27권 1호(1994. 7), 7-24면.
- “워렌법원: 개혁의 수단으로서의 헌법판결(II)” (Archibold Cox 저), 『서울대학교 법학』, 제35권 2호(1994. 10), 270-297면(번역논문).
- “Bentham, Modernity, and the Nineteenth Century Revolution in Government”, 『서울대학교 법학』, 제35권 4호(1994)(김종철 공저).
- “마그나 카르타와 그 영향”, 『저스티스』, 제27권 2호(1994), 133-176면.
- “법치주의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리”, 『법과 사회』, 11호(1995), 5-18면.
- “特許法 제186조의 違憲與否에 關하여: 違憲法律審判에 관한 參考人陳述”, 『憲法裁判資料集』, 7輯(1995. 12), 47-70면.

- “Political Parties, Parliamentarism and Representation in Britain”, 『서울대학교 법학』, 제36권 2호(1996), 252-278면(김종철 공저).
- “The Influence of American Constitutionalism on South Korea”, 『Southern Illinois Law Journal』, 22 (Fall 1997), 71-115면.
- “Dred Scott 판결의 의미”, 『인권과 정의』, 250호(1997), 123-131면.
- “미연방헌법 수정 제9조의 의미”, 『서울대학교 법학』, 제38권 2호(1997), 33-56면.
- “미연방헌법 수정 제2조(무기소장권)의 의미”, 『서울대학교 법학』, 제38권 3・4호(1997), 129-149면.
- “법률가를 몰살하자! 세익스피어의 진의는?”, 『법과사회』, 15호(1997. 12), 230-246면.
- “이혼법정에서의 아동문제”, 『인간발달연구』, 제5권 1호(1998), 213-233면.
- “헌정 50년과 평등권”, 『헌법학연구』, 제4권 1호(1998).
- “평등권 50년: 자유에서 평등의 논쟁으로”, 『헌법학연구』, 제4권 1호(1998. 6), 44-56면.
- “미국에서의 법과 문학 운동”, 『서울대학교 법학』, 제39권 2호(1998. 8), 215-247면.
- “영국법과 미국법의 비교연구(5): (법이론)(1)”,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1호(1999), 211-240면(김종철 공저).
- “영국법과 미국법의 비교연구(5): (법이론)(2)”,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2호(1999), 152-181면(김종철 공저).
- “21세기 기본권과 인간상 - 새로운 헌법학의 모색을 위한 제언”, 『헌법학연구』, 제5권 2호(1999), 9-22면.
- “헌정 50년과 자유와 평등의 이념”, 『서울대학교 법학』, 제39권 4호(1999. 2), 34-56면.
- “법으로 읽는 문학과 영화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 『문학과 영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 31-41면.
- “미국독립선언서 주석”, 『국제지역연구』, 제10권 2호(2001), 103-126면.
- “사법개혁과 법학교육의 과제”, 『헌법학연구』, 제7권 2호(2001), 57-71면.
- “미국연방헌법의 배심조항”, 『미국헌법연구』, 12호(2001), 77-101면.
- “2002년 헌법학의 과제”, 『법학논총』,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제25집(2001), 3-11면.

- “피와 법의 알레고리-박정애의 소설들”, 『문예운동』, 제74호(2002), 11-16면.
- “법과 문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에로티시즘”, 『문학과 의식』, 제57권(2002 겨울), 89-97면.
- “21세기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2호(2004), 1-7면.
- “미국대중헌법사와 영화 – 영상법 배우로서의 헨리 폰다”, 『미국학』, 제27권(2004), 117-138면.
- “‘Law School’의 본질과 현상”, 『동아법학』, 제37권(2005), 277-288면.
- “미국헌법사상과 한국의 헌법개혁”, 『헌법학연구』, 제12권 3호(2006), 37-75면.
- “국제인권규약상 교육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 『아세아여성법학』, 9호(2006. 9), 9-25면.
- “Legal Reform in Korea and the Agenda of “Graduate Law School””, 『Wisconsin Law Journal』, Vol. 24, No. 1 (Winter 2006), 223-242면.
- “한국의 헌법개혁과 미국헌법”, 『헌법학연구』, 제12권 4호(2006. 12).
- “21세기 한국법학의 지향목표”,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4호(2006. 12), 1-12면.
- “선진헌법의 시대 – 옛길에 새 걸음으로”, 『법과 사회』(특집: 헌정 60주년과 인권보장), 제34권(2008), 9-22면.
- “한국사회의 특성과 법과 인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제26권(2008), 171-192면.
- “Korean Legal System and the Rights of Persons with Mental Disorders: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Journal of Korean Law』, Vol. 7-1 (2008).
- “선진헌법의 시대 – “옛 길에 새 걸음으로!” –”, 『법과 사회』, 제34권(2008), 9-22면.
- “한국문학 속의 법: 법학자의 눈”, 『현대비평과 이론』, 제16권 제1호(통권 31호)(2009년 봄 · 여름), 13-24면.
- “A Decade of Glories and Disgrace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1-2011)”, 『Twaiwan Human Rights Journal』, Vol. 3 (2013), 3-18면.

2. 기타논문집 게재논문

- “혼인계약론”, 『Fides』, 제27권 1호(1987. 2), 10-22면.
- “국제간 정보유통(Transborder Data Flow, TBDF)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 『87

전기통신 학술연구과제』(1987).

- “미국의 연방주의 – 통상조항을 중심으로”,『미국헌법과 한국헌법』(1988), 393-410면.
- “William Rehnquist 判事의 法思想”,『유기천박사 고희기념논문집』(1988. 6), 943-965면.
- “Hugo Black의 사법철학: William Douglas와의 대비”,『무애 서돈각박사 고희기념논문집』(1989), 321-337면.
- “윌리엄 렌퀴스트의 사법철학”, 『임원택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1989), 70-85면.
- “오코너 여판사와 미연방대법원”,『유기천교수 고희기념논문집』(1989), 626-645면.
- “친권허가제 소고”,『영산 박병호교수 화갑기념논문집』(1991), 499-512면.
- “Lord Denning과 영국행정법”, 『남하 서원우교수 화갑기념논문집』(1991), 621-638면.
- “미국헌법과 낙태”,『금랑 김철수 회갑기념논문집』(1993), 323-336면.
- “Officialdom Ethics in Doubt “Bizzarre Thefts May Deepen Popular Doubts about Korean Politics Korea Focus”,『The Korea Post』, Vol. 1, No. 5 (1993).
- “미국헌법상 정치적 행위”,『목촌 김도창박사 고희기념논문집』(1993), 99-111면.
- “The Growth of the Bar and the Changes in the Lawyer’s Role: Korea’s Dilemma”,『Law and Technology in the Pacific Community』(1994), 120-134면.
- “How Should We Breed Judges?”, Vol. 2, No. 1 (1994), 62-71면.
- “Rule of Law – A Must for New Government”,『Korea Focus on Current Topic』, Vol. 2, No. 2 (March-April 1994), 109-111면.
- “미국헌법의 경제조항”,『이종원박사 고희기념논문집 상』(1995), 589-608면.
- “평등권: 미국헌법을 중심으로”,『헌법재판연구』, 6호(1995), 37-166면.
- “미국에서의 법과 문학 운동”,『미국 지성사의 흐름』(1999), 331-375면.
- “미국헌법 이론사 개관”,『권영성교수 정년기념논문집』(2000), 495-508면.
- “Should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Be Different?”,『Law Asia 99』, Book 1, Part V, No. 8 (1999), 1-10면.
- “미국연방헌법 수정 4조의 본래의 의미”,『우범 이수성선생 화갑기념논문집』(2000), 235-250면.
- “사상의 자유와 민주주의”,『21세기의 인권』(2000), 27-47면.

-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구현”,『한국사회의 비전21』(2001), 105-130면.
- “미국헌법과 자유주의”,『자유주의란 무엇인가』(2001), 313-338면.
- “수출상품으로서의 미국헌법”,『현대 공법학의 과제: 청담 최송화교수 화갑기념논문집』(2002), 107-124면.
- “미국법상 계약의 해석과 배심의 역할 – Parole Evidence Rule”,『21세기 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심당 송상현교수 환갑기념논문집』(2002), 201-215면.
- “법조인의 인사제도”,『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편, 제2판(2003), 192-204면.
- “유진오 – 통합적 지성인의 삶”,『한국의 공법학자들 – 생애와 사상』, 한국공법학회(2003), 33-56면.
- “시민종교와 미국헌법 – 영화〈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韓國公法理論의 새로운 展開: 목촌 김도창교수 팔순기념논문집』, (2005. 8).
- “Rule of Law in Korea: Two Decades with the New Constitution.”,『BESETO Conference』(2008. 9).
- “이병주: 법과 문학의 선구자”,『이병주기념사업회 국제문학제자료집』(2009. 10), 3-22면.
- “Democratization of Korea and the European Values”,『National University of Taiwan』(2010).
- “학병세대 언론인의 글쓰기: 이병주와 황용주의 경우”,『이병주기념사업회 국제문학제 자료집』(2011. 10), 3-12면.
- “Lee Byeng-ju, A Pioneer in Law and Literature”, Preface『Alexandria』(2012), 4-12면.

3. 공동저술

- 『法學敎育과 司法制度改革』, 서울大學校出版部(1988).
- 『테러리즘과 그 법적대응』, 치안논총, 치안연구소, 11호(1995. 5).
- 『아동과 청소년의 법의식조사(법인지, 법정서와 법수행 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한국인간발달학회, 제2권(1995).
-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삼성경제연구소(2001).
- 『대학의 규제완화를 통한 자율혁신역량 강화 및 구조개혁 방안연구』, 교육정책연구 2004-특 13, 교육인적자원부(2004).
- 『다문화교육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2013).

[기타 저술]

1. 서평

- “참혹한 두 도시 이야기(박원순)”, 『역사비평』, 제20권(1993), 393-400면.
- “우회전-렌퀴스트 대법원의 구축(D.G. Savage)”, 『서울대학교 법학』, 제34권 1호(1993), 198-204면.
- “소설 알렉산드리아(이병주)”, 『소설과 사상』, (1993 가을호), 102-110면.
- “The Next American Nation/Up from Conservatism (Michael Lind)”, 『서울대학교 법학』, 제39권 4호(1993).
- “The World Revolution (Paul K. Ryu)”, 『서울대학교 법학』, 제38권 2호(1997), 149-153면.
- “헌법적 근거(John Hart Ely)”, 『서울대학교 법학』, 제38권 3호(1997), 287-292면.
- “미국헌법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Carl Van Doren)”, 『헌법학연구』, 제4권 3호(1998), 418-437면.
-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장호순)”, 『헌법학연구』, 제4권 2호(1998. 10), 426-427면.
-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Charles Beard)”, 『헌법학연구』, 제4권 3호(1998. 10), 428-430면.
- “아레오파지티카: 존 밀턴의 언론출판 자유에 대한 선언(John Milton)”, 『헌법학연구』, 제5권 1호(1999), 406-409면.
- “자유를 위한 탄생 – 미국여성의 역사(조지형)”, 『헌법학연구』, 제5권 1호(1999), 403-405면.
- “미국헌법의 이데올로기적 기원(Bernard Baylin, The Ideological Origin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1967)”, 『헌법학연구』, 제5권 1호(1999), 410-412면.
- “The Next American Nation: The New Nationalism and the Fourth American Revolution (Michael Lind)”, 『서울대학교 법학』, 제39권 4호(1999) 282-286면.
- “Freedom’s Law: The Moral Reading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Ronald Dworkin)”,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1호(2000), 397-399면.
- “근대한국의 국가사상(김효전)”, 『헌법학연구』, 제6권 2호(2000), 335-336면.
- “Recent Transformations in Korean Law and Society (ed. Dae-Kyu Yoon)”, 『헌법학연구』, 제6권 2호(2000), 337-338면.
-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정약용)”, 『솔』, (2002. 1. 28)
- “Another Quiet American (Brett Dalkns, 2003)”, 『공익과 인권』, 제1권 2호(2004), 129-137면.

- “탄핵, 감시권력인가 정치적 무기인가(조지형)”, 『미국사연구』, 제20권(2004), 267-270면.
- “아웅산 수지의 미얀마: 출구는 있는가?(Barbara Victor)”, 『공익과 인권』, 제2권 1호(2005. 2), 129-139면.
- “진실인가, 화해인가?: 피노체트 이후의 칠레(Naomi Roth-Arriaza)”, 『공익과 인권』, 제2권 2호(2005. 8), 169-180면.
- “Opening of Mexico (Julia Preston & Samuel Dillion)”, 『공익과 인권』, 제3권 1호(2006), 369-377면.
- “마비된 이성(체슬로 미워시, The Captive Mind, 1951)”, 『인권법 평론』, 창간호(2007), 287-297면.
- “사람답게 아름답게(차병직)”, 『인권』, (2007. 9, 10).
- “Ermita (Sionil Jose)”, 『샘터』, (2007. 10).
- “1950년대 한국영화와 문화담론(오영숙)”, 『서평문화』, 제67집(2007년 가을), 165-170면.
- “Juridical Activism of India: Transgressing Borders and Enforcing Limits (S. P. Sathe)”, 『인권법평론』, 제2호(2008), 365-369면.
- “우리는 왜 가난한가?(시오닐 호세)”, 『인권법평론』, 제3호(2008. 12), 247-253면.
- “Sidelines (Thought Pieces from Tempo Magazine)”, 『인권법평론』, 제4호(2009. 6), 187-195면.

2. 논설

- “國益판단, 정부 독점일 수 없어”, 『月刊朝鮮』, 92호(1987. 11), 392-401면.
- “법조계비리, 국민의 책임이다”, 『한국인』, 제17권 5호(1988), 61-65면.
- “이일규 법원에 드리는 글”, 『사법행정』, 제29권 8호(1988), 87-89면.
- “사상규제법부터 고치자”, 『월간조선』, 104호(1988, 11), 458-469면.
- “司法制度의 改善방안”, 『思想과 政策』, 24호(1989. 9), 207-220면.
- “알 권리가 먼저인가, 국가기밀이 우선인가”, 『한국인』, 제9권 9호(1990), 56-60면.
- “현행저작권분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작권』, 제10호(1990 여름), 63-66면.
- “우리는 어떻게 법관을 만드는가?”, 『비판』, 제1권(1993), 60-71면.
- “보장된 삶 대신 약자편에서”, 『월간샘터』, 제29권 1호(1998), 38-39면.

- “법조인양성 과정을 바꾸어야 한다”, 『한국인』, 제18권 9호(1999), 55-59면.
- “대학의 기능-연구기능 교육기능”, 『대학교육』, 100호(1999. 7・8), 96-99면.
- “인문학의 위기와 문학적 대응: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문학의 지적보편성을 위협하고 있다”, 『문학사상』, 338(2000. 12), 40-47면.
- “감성시대의 이성적 인간 – 한국의회민주주의, 탄핵너머로 가는 길”, 『당대비평』, 제26권(2004), 20-26면.
- “불평등한 세상의 균형잡기”, 『월간샘터』, 제432호(2006), 14-15면.
- “휴대전화 감청 허용순간 언론의 취재보도 자유 위협”, 『新東亞』, 제51권 10호 통권 589호(2008. 10), 320-327면.
- “정권은 짧고 인권은 길다”, 『시사IN』, 제81호(2009. 4. 4), 20-21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국가와 갈등 없는 인권위, 더 이상 인권위 아니다”” 『勞動法律』, 통권 217호(2009. 6), 26-30면.
- “MB에게 한차례도 업무보고 못해: 임기 4개월 남기고 사퇴한 안경환 전인권위원장”, 『Weekly경향』, 통권 894호(2010. 10. 5), 24-25면.
- “정권따라 흔들리는 인권위라면 아예 문 닫는 편이 낫다: 인권위 대규모 징계사태를 보는 전직위원장의 고언”, 『新東亞』, 제54권 10호, 통권 625호(2011. 10), 142-151면.

3. 장기 칼럼 집필

- 1988. 10～1990. 5 『월간조선』
- 1993～1995 『동아일보』 ‘법과 문학 사이’ 100회 집필(매주)
- 1999～2003 『계간 문예운동』 문학 칼럼
- 2000. 4～2001. 3 『동아일보』 및 『동아닷컴』 ‘법과 영화 사이’ 매주 집필
- 2002. 1～2002. 12 『동아일보』 및 『동아닷컴』 ‘헌법의 눈’ 분담 집필
- 2002. 6～12 『조선일보』 ‘문학의 숲, 고전의 바다’ 격주 집필
- 2004. 9～2005. 4 『동아일보』 ‘느낌이 있는 편지’ 작가 정이현과의 공개서신
- 2011. 10～2012. 10 『신동아』 인권위원장 회고록

4. 대담

- “言論被害와 救濟”, 『大韓辯護士協會誌』, 146호(1988. 10), 39-55면.
- “法治아니면 「문민」아니다”, 『新東亞』, 424호(1995. 1), 122-139면.
- “‘법과 문학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5(1995. 12),

272-298면.

- “양승규 교수의 학문과 삶 – 양승규 교수 정년기념 대담”, 『서울대학교 法學』, 제40권 1호(2000), 1-18면.
- “인권에는 마침표가 없다”, 『인물과 사상』, 제104호(2006), 16-36면.
- “2006 한국인권 논의의 지평과 전망”, 『인권평론』, 통권 1호(2006년 하반기), 17-46면.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꾼다”, 『월간복지동향』, 제100호(2007), 3-8면.
- “국가인권위는 정부와 긴장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말』, 통권 260호(2008년 2월), 104-109면.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3호 2013년 9월 71～132면
Seoul Law Journal Vol. 54 No. 3 September 2013. pp. 71～132

〈대담〉

청운 안경환 교수 정년기념 대담

일　　시 : 2013. 6. 28. (금) 14:00～20:00
장　　소 : 서암관 백충현 세미나실
대 담 자 : 한인섭(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김종철(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영(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한상훈(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장한(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종현(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동민(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사)
김영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녹취·정리 : 이상훈(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조교)

한인섭 : 저희들이 평소에 존경하는 안경환 교수님을 모시고 정년기념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담을 할 때에는 참여하는 제자들이 두셋 정도 되는데, 오늘 여러 제자들이 다투어 오겠다고 해서 일고여덟 명이 참여하는 특이한 형태의 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정년에 다다른 소감이 우선 어떠신지요.

안경환 : 글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요새 마음에 조금 편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정년을 의식하면서 지나치게 비감한 마음을 가지고 저를 대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떠나기 전에 식사라도 하자거나 등등.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덜 편할 때도 있어요. 역시 사람들이 내가 빨리 떠나길 바라는구나. (일동 웃음)

한인섭 : 작년과 올해 교수님이 쓰신 책이 적지 않습니다. 혹시 정년준비를 염두에 두시고 저작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안경환 : 정년이란 일단 법학교수를 면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법학교수를 면하기 전에 정리할 것을 글로 써야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대학도서관의 자료들도 교수 신분이 있을 때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그런 생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것 같습니다.

한인섭 : 요즘 대학도서관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안경환 : 지난 3월에 나온 <황용주, 그와 박정희의 시대>를 쓸 때도 개인 소장자료 말고 대학 소장도서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글 쓰는 것은 평생습관이기 때문에 퇴임 후에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주제는 내가 법학교수임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택하고 싶지요.

한인섭 : 정년이 단절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씩 여유를 두고 쓰실 수도 있지 않나요?

안경환 : 그런 건 아니고요, 주제에 있어서 내가 법학교수로서 크게 기여는 못해도, 그래도 법학이라는 틀 내에서 글을 쓰려는 인위적인 노력이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법학교수의 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인 제도를 논하면서 법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글을 쓰려 했다는 생각입니다.

한인섭 : 모든 글쓰기는 자유롭게 쓰지만, 법과의 연관성을 계속 가지고 쓰게 되는데, 정년 후에는 그 연관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법으로부터의 자유'인가요?

안경환 : 네. 그런 셈이지요.

한인섭 : '법 속에서의 자유'와 '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중 택일하라면 어떤 편을 택할 참인가요.

안경환 : 누군가의 말을 빌리자면 '법학이여 안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동 웃음)

한인섭 :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이, 마치 내년부터는 글 쓸 기회가 없다는 듯이 근래에 아주 많은 저작을 출간하고 계시거든요.

〈인권, 셰익스피어, 황용주〉

안경환 : 그건 보기 나름인데요, 과거에도 그런 정도의 글쓰기 분량을 꾸준히 유지했을 겁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국가인권위에 가기 전엔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 돌아와서 그동안 밀려있던 글을 낸 거고요. 이제 전형적인 법학논문을 쓴다는 부담은 적어졌기 때문에 다른 형식의 글을 쓸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전반적으로 분량 면에서는 아무래도 과거만 못하지요.

한인섭 : 사람들을 너무 주눅들게 하신 것은 아닌지. (웃음) 최근에 낸 저작 3권 중심으로 우선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지간 인권이다>(2012), <법, 셰익스피어를 입다>(2012), 그리고 가장 최근의 <황용주, 그와 박정희의 시대>(2013). 각각의 책들이 단기간 준비해서 쓸 수 있는 글들이 아닌 것은 틀림없고요, 오래 생각하고 자료도 모으고 해야 나올 수 있는 책 같은데요. 최근에 나온 책들을 중심으로 선생님의 관심사와 준비과정 같은 근황을 듣고 싶습니다.

안경환 : <좌우지간 인권이다>는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죠. 인권위원장의 회고록이니까요. 제게 대외 공직은 처음인데, 그때 나름대로 사건별로 메모해 둔 내용이 있습니다. 공직은 교수로서는 예외적인 일인 만큼 나름대로 사명감도 있고 책임감도 들고 해서요. 결정적으로 내가 회고록을 써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재직 중에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피상적인 보도로는 실상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직 중에 대통령 두 분을 모셨는데, 두 분의 정치철학이나 인권위를 대하는 자세가 극적으로 대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서 우리나라 인권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정부와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있는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해 둔 메모를 시의에 맞추어서 월간지에 연재한 것을 모아서 새 대통령 취임 전에 펴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인권위와 인권정책의 관한 새 대통령의 판단자료로 제공할 의도로 썼습니다. 인권위의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은 아니고, 제가 선택한 주제를 가지고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위원장 취임 전의 인권위와 관련된 추상적인 얘기와 저의 개인적인 경험도 들어가 있긴 하죠.

한인섭 : 제목을 참 기가 막히게 잘 정한 것 같은데요.

안경환 : 흔히 우리나라에서 인권하면, 정치적인 좌우로 (물론 그것도 명확한 기준 없이) 구분하고 인권은 좌 쪽의 가치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늘 주장하듯이, 인권은 좌도 우도 아니고, 정치적 진보나 보수와 결합된 것도 아니고, 모든 정치체제에 공통된 가치라고 믿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인섭 : 최근 우리나라에서 좌와 우를 나누는 아주 이상한 풍조가 강화되었는데요, 안 교수님은 좌입니까, 우입니까? (웃음) 그런 질문을 종종 받으시죠?

안경환 : 네. 저는 항상 같은 자세인데도 사람들이 좌다, 우다 분류를 하는데요.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인권위원장으로서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지 않고 균형을 잘 잡았다'라고 하지만, '이슈에 따라 좌우를 왔다 갔다 하는 기회주의자'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동 웃음) 좌/우 기준이 뭔가에 대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이겁니다. 하나는 현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좌라면 저는 당연히 좌입니다. 현 체제의 완결성을 믿지 않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요. 또 하나는 사회에 다수와 소수, 강자와 약자가 있다면 소수와 약자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습관을 키운다는 거지요. 전자는 굳이 먼저 챙기지 않더라도 모든 사회제도나 관행이 그쪽에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이슈에 대해 제가 비록 같은 생각을 가지더라도 굳이 제가 나서서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가 잘한다는 얘기는 보통 잘 안하지요. 그러니까 건설적 제안이나 비판,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교수가 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 원칙은 지금도 계속 지니고 있어요. 이건 모든 정부에 대해 공통되게 지니고 있는 제 원칙입니다. 그러니 이슈에 따라 진보다 보수다, 평가가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기회주의자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가진 원칙은 이 두 개뿐입니다.

한인섭 : <셰익스피어>는 그동안 쓴 셰익스피어와 법의 압축판인가요.

안경환 : <법, 셰익스피어를 입다>는 좀 오래 걸린 책입니다. 사실은 셰익스피어는 우리 세대의 고전이자 상식이었지요. 그런데 법으로 읽는 사고는 미국 시절에 착안했어요. 구체적으로는 미국에서 로스쿨에 다니기 전에 잠시 학사과정을 다녔는데요, 그때부터 생각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써 왔습니다. '법과 문학' 강좌의 필수적인 내용이 되기도 했지요.

아마 여러분들 학생시절에 제가 썼던 글들도 있을 겁니다. 게다가 제가 명색 '영미법' 교수인데 미국법에 비해 영국법에 관한 지식이 얕고 학문적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도 들어 인류의 고전이라는 셰익스피어의 전 작품을 상대로 법률주석서를 써본다는 자세로 준비해 왔습니다. 미국과 영국에도 그와 같은 전반적인 주석서는 없어요. 제가 퇴임하기 전까지 펴내고 싶어 서울대 출판문화원과 상의해보니까, 그런 책은 현실적으로 시간도 더 걸리고 상업성이 없으니, 우선 에세이 형식으로 하나 써보자고 해서, 먼저 써낸 거지요. 그 책에는 열두어 개 정도의 작품이 나와 있지만, 나머지 작품에 대해 써 둔 에세이들도 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셰익스피어 법률주석서를 쓰려고 합니다.

한인섭 : 그전에도 셰익스피어에 관해서 논문들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것들하고 이 책하고 비교해보자면, 각주 없이도 술술 읽히게 만드신 것 같은데요?

안경환 : 네, 그 책은 법률 '에세이'이니까요. 주된 독자는 법학도를 염두에 두었어요. 문학도와 일반 독자는 셰익스피어를 법적 관점에서 읽지 않거든요. 서양에선 셰익스피어에 대해서도 법적 관점에서 쓴 글들이 한 해에도 수백 편씩 나옵니다. 그런 자료들을 가급적 소개하기 위해서 각주들을 넣었지요. 문학작품은 시대의 텍스트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한 시대의 공적 텍스트인 법이 반드시 투영되게 마련이잖아요. 셰익스피어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문학도들은 잘 읽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이 아예 무시되어 버리기 십상이지요.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한인섭 : 세 번째 책이 <황용주>인데요, 그 책은 아주 뜻밖이고, 저도 좀 불만이 있는데요. (일동 웃음) 말하자면 황용주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4.19의 단초를 열었던 김주열 사건이나 마산시위의 진상을 밝히는데 언론인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부분과, 박정희 군사쿠데타의 모의자이자 설계자라는 부분이 교차하는데, 후자와 관련하여 부정적 인상이 막연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부일장학회를 강탈하는 데 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고요. 그런데 안 교수님께서 뜻밖에도 황용주에 대한 책을 아주 두툼한 분량으로 냈습니다. 여기에서는 법학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안경환 : 그것은 제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과 문학'이라는 주제는 일제시대부터 서로 상극으로 내려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쪽은 제도에 항의하는 쪽이고, 법학은 제도를 운영하는 쪽이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양자를 아울러야만 통합적 지성의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저런 것들을 다 떠나서, 제가 황용주에 대하여 쓸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 계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분이 죽고 난 후에 평생 모아 둔 일기장이 저한테 왔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관심사 중의 하나가 일제 말기의 지식청년, 특히 학병에 동원되었던 대학생들의 고민과 행보였습니다. 제 아버지 세대이지요. 일제 말기 식민지 출신 지식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이미 출간된 문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세대의 역사 인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기본적으로 4.19 이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일제 말기는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전부 '일제의 역사'라고 치부하고 오로지 청산의 대상으로만 삼았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과연 그런 걸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황용주의 일기장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더 생기면서 또 후세인들이 그 시대를 균형 있게 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긴 인생 중에서 우리는 특정시대의 특정사건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전체를 재단해서 평가하고, 나쁜 쪽이 있으면 그의 삶 전체

와 인간 자체가 나쁘다고 규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황용주가 누군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박정희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 볼 때 그의 부정적 면을 부각시킬 것인데, 그의 인생 전체로 볼 때, 나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해방 직후에 당시의 젊은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떤 변호사 한 분이 그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더라고요. 해방 직후에 장준하, 이강국, 황용주,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각각, 김구, 여운형, 김원봉의 비서의 자격으로 말입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새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했던 모습들이었던 것이지요. 그 세대 작가로서 이병주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의 말 중에서, '나에게 조국은 없다. 산하가 있을 뿐이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저한테 가장 가슴에 와 닿았던 말이었어요. 조국이 없었던 이분들이 해방 후에 어떻게 새로운 조국을 만들 것인가 고민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조국이 두 개로 쪼개져버렸으니까, 그때 느꼈던 지식인들의 갈등이 어떠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결국 자신의 지도자가 어떤 입장에 서게 되느냐에 따라 이 사람들의 인생도 결정되지 않았겠습니까? 제 아버지도 같은 시대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여러 가지 일들을 근년에 와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책의 서문에 썼다시피, 숨은 저술 동기 중에 하나로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신 제 아버지에 대한 불편하고 미안한 마음이 깔려있지요.

황용주에 관한 책은 '평전'이 아니고, 그냥 전기입니다. <조영래 평전>(2006)의 경우에는, 제가 제 입장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평전'이지만요. 황용주 책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쓴 것입니다. 그 시대 지식인의 하나의 유형으로서의 그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것과, 그 사람의 개인적 삶에 대해서 쓰고 싶었지요. 특히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전성기를 누리다 몰락하고, 후반 40년을 비참하게 살다가 자신이 묻힐 땅 한 뼘도 없이 죽은 지식인의 허무한 삶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었지요. 이를테면 글로서라도 비명(碑銘)을 만들어 주고 싶은 그런 애잔한 마음이었어요. 어쨌든 '학병세대' 지식인의 세계에 들어가 보려고 애를 써봤고, 해방 이후의 갈등들을 찾아보고, 그런 점에서 저한테는 우리 사회의 삶의 뿌리를 소급하여 연장해 보자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주지 않더군요.

전형적인 반응은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 박정희의 친구에 대해 썼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왜 그를 썼느냐?"고 힐난하는 분위기더군요.

심지어 저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들은 대체로 심정적으로 그 책을 읽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마지못해 읽은 분들은 “왜 그랬어?” 혹은 “전향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일동 웃음) 그런데 이 책은 갑자기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0년이나 걸려서 나온 책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좌우지간 인권이다>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삶을 총체적으로 보자는 것 하나, 그리고 어떤 이유이든 비록 싫어하는 사람의 삶에도 이런 측면이 있었구나라는 것 하나,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저로서는 고맙겠습니다.

한인섭 : 지금까지 나온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안 교수님은 사람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재단・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누구에 대해서건 균형 감각, 통합적 지성, 좌우 ‘사이’에 대한 것을 늘 강조해 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아도 될지요?

안경환 : 예. 그런 셈이죠. 정치인이나 사회운동을 한 사람은 자기 입장을 분명히 정해서 극대화시키는 속성이 있어요. 그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식인은 정치인이나 운동가와는 다르니까, 그것을 배경을 삼아 입장을 선택하더라도 역사적 사실만은 균형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식, 아버지, 그리고 밀양〉

한인섭 : 또 하나 요소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소수에 대한 고려, 약자에 대한 연민 같은 정서가 많은 것 같은데요. 80년대 김성식 교수님을 쓰면서 ‘연민’이라는 단어를 쓰신 적이 있죠?

안경환 : 네. 저한테 영향을 준 사람이 사상가냐, 실천적 지식인이냐,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고 할 때, 김성식 교수님이 제 청년시절에 깊은 영향을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고려대의 개교와 동시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다 해직당했고 복직되어 정년퇴임하셨어요. 박정희 정권에 비판적인 칼럼을 곧잘 쓰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시론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약자에 대해 흘리는 연민의 눈물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때 약자라 함은 정치적 소수자, 경제적 약자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겠죠.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셨기 때문에, 고전적인

의미의 약자에 대한 배려가 몸속에 배어 있었던 분 같아요. 그것은 굳이 종교가 아니더라도 세상을 살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한인섭 : 김성식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건 아니죠?

안경환 : 개인적으로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일제 강점기 규슈 제국대를 나오시고 평양 숭실학교에서 선생을 하시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유복자 외아들이셨는데, 7년간이나 쌀장사를 하시면서 민족의 지조를 지키신 분이셨습니다. 해방 이후 월남해서 고대에 재직하셨는데, 그때 제 아버지가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시다가 돌아와 나이 많은 학생으로 김 선생님께 배웠던 최초의 제자였어요. 고대 사학과 1회 졸업생이셨어요. 처음부터 장래 교수요원으로 주목받고 있었던 걸로 알아요. 김성식 교수님 막내 따님과 제가 같은 해 태어났어요. 그런 저런 이유로 교류가 있었죠.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선생님을 찾아갔고 75년부터 86년 돌아가실 때까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는 "돌아오는 거지? 반드시 돌아오는 거지?"라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방학 때마다 뵙곤 했는데, 돌아가신 때가 86년 2월이었는데요, 경희대 조영식 총장의 숭실학교 시절의 은사이셨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경희대 '평화대학원'에 자리를 주선하고 계셨어요.

김종철 : 저희가 미리 질문지를 선생님께 드렸는데요. 선생님 성장과정이나 개인사, 학문활동, 사회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성해 봤고요. 한인섭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색다른 시각에서, 다소 긴장되는 (웃음) 질문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편하게 첫 질문으로 좌우명이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셨던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경환 : 굉장히 거창한 질문인데요. 그런 건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살아서 특별한 건 없지만 굳이 끄집어내자면 두 가지 정도가 있긴 한데요. 집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던 '좀스러운' 가훈이 있어요. '벼슬하지 말라'는 것과 '흉년에 땅을 사지 말라'는 겁니다. 벼슬하지 말라는 것은 형편이 잘 안되서 그랬겠지요. '흉년의 땅'은 할아버지가 대지주셨으니까, 타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자주 듣던 말은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반드시 자기보다 센 사람

하고 싸워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교수가 되면서 '교수로서 할 일과 안 할 일' 10가지씩 적어둔 게 있습니다.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이건 아마 제가 교수직을 맡을 때 생각했던 것과 학생시절에 교수님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종합된 것이지요. 그 기준으로 선배 교수님들을 한 번씩 속으로 점수를 매겨보고 그랬는데요. 꼭 해야 되겠다는 것 중에 하나는, 학생면담시간(office hour)을 정해서 학생이 오건 안 오건 간에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었어요. 학생이 낸 등록금 중에는 선생을 만날 권리가 있는데, 이건 미국에 있으면서 배운 거예요. 또 하나로 시시한 것이긴 하지만 '학생에게 작은 일이라도 시키면 적어도 밥은 사주자', 이런 식입니다. 27년 동안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는 했어요.

한인섭 : 그것들 다 말씀해주시죠. 후학들을 위해서요. (웃음)

김종철, 이우영 : 그건 저희도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웃음)

안경환 : (웃음)

김종철 : 좀 특이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선생님 조교할 때, 선생님 외국 출장을 가셨을 때, 서랍 한 쪽에 유서를 작성해 두신 기억이 납니다. 혹시나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걸 열어 보라고 하셨는데요. 그 서랍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안경환 : 그 당시는 여행하면서 가끔씩 위험한 지역도 가고 그랬는데, 그때 혹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당장에 문제될 부분, 가령 대학원 지도학생들에 대한 임시적 대책들, 그리고 최소한의 재산 처분에 관련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996년 이후에 가족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없어지게 되었죠.

김종철 : 말씀하신 김에, 제자들한테 공부 면에서도 은혜를 베푸셨지만, 생활면에서도 많은 지혜와 물적 도움도 주셨는데요. 특히 가족사나 유년시절 추억 등을 기회되실 때마다 말씀해주시면서, 저희들에게 인생에 대한 지혜를 되새기는 기회들을 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가령 밀양에서의 중학교 생활, 부산에서의 고교시절, 안의나 다른 의미 있는 지역들에 저희들을 데리고 가실 때마다 그와 관련한 에피소드들을

말씀해 주신 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퇴임 후 밀양에 거처를 마련하신다는 계획도 말씀하셨던 적이 있고요. 이런 에피소드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안경환 : 서울에서 태어나 6.25를 겪었고 초·중등학교를 여러 학교에 전학을 다녔어요. 중학교는 아버지 계신 안의(경남 함양군)에 갔다가 다시 고향인 밀양으로 돌아왔어요. 초등학교 시절 이승만 대통령 생일날, 전국 어린이 백일장이 있었는데요, 제목은 "우리 대통령"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당시 같은 백일장에 나갔던 노무현 대통령은 원고지를 찢고 나왔다고 하는데, 나는 거기서 상을 받았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열등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일동 웃음)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그 소식을 아시고 기가 막혀 하시고, 아버지는 이승만 단독정부를 끝까지 거부하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쳐서 매를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할 때도 아픈 기억이 있어요. 집안 사정상 백부께 의탁하던 시절이었어요. 아버님은 5남 2녀 중 막내였어요. 백부께서 일찌감치 살림을 물려받으셨고, 동생들이 분가한 후에도 계속 뒤를 돌보아 주셨어요. 백부 당신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모두다 일본유학을 시켰어요. 여동생들의 남편까지도. 해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랬습니다. 막내 동생의 아들인 저의 교육도 응당 백부의 몫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당연하게도 집안의 전통대로 대구나 서울에 있는 학교로 진학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백부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너는 밀양에서 농잠학교(밀양실업고)에 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분 생각에는 동생들을 다 교육시켰지만 결과는 허무하다는 생각도 드셨고, 그 많은 조카들이 있었지만, 현재 자신들의 처지를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듯합니다. 제가 그걸 수용할 수 없어서 혼자서 부산에 가서 입학시험을 치렀어요. 그 지방 명문의 인문학교였기 때문에 응당 백부께서 학비를 주실 줄 알았죠. 그런데 백부께서 "네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니 네 스스로 책임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당시 바라셨던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백부님 말씀이 우리 집안의 법이었는데, 그 법을 제가 어긴 것이죠. 저는 나름대로 서럽고 야속했어요. 이분도 마음속으로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내색은 못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교수가 되고 나서, 백부께서 그때는 미안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정말 죄송했다고 진심으로 사과드렸어요. 여하튼 그때 부산 가서 고생을 좀 한 셈이지요.

한인섭 : 고교시절에 집안에서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못 받았나요? 그러면 3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안경환 : 처음에는 힘들었죠. 자취생활하면서 신문배달도 하고…. 2학년 초까지 그랬고, 2학년 2학기부터는 좀 괜찮았어요. 사정을 안쓰럽게 생각하던 다른 친척과 지인들이 좀 도와주었어요.

〈서울법대 시절〉

이우영 : 다음으로는요, 그리 재미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어떻게 법과대학을 선택하시게 되셨는지, 유학은 어떤 계기로 가시게 되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경환 : 사실 고등학교 시절은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서 고생한 셈이었죠. 자존심만 버리면 학비는 받을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3학년 때부터 무리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는 법대에 대한 생각이나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당시 제가 다닌 고등학교 도서실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소장도서들을 거의 다 읽었고요. 그때 잠시 제가 책 읽던 모습을 보던 친구가 (최근에 서울대 정치학과를 정년퇴임한) 김세균이었어요. 그 친구가 저에 대해 말하길 맨날 혼자서 책만 읽더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내 성향이 문리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걱정을 많이 했죠. 집안의 모든 사람이 문리대를 가서 룸펜(lumpen)이 되면 대책이 없다, 한 세대로 족하다는 생각이 있었죠. 담임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담임선생님께서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결석하면 하숙집에 찾아오셔가지고는 갑자기 소주 마시러 가자고 하시면서 데리고 나갔어요. 제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현실적인 면을 강조하셨지요. 제게 결정적인 다른 대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법은 현실 제도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니깐, 좋은 말로 하면, '두 발을 땅에 딛고 머리는 하늘로 향하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법대로 갔죠.

한인섭 : 법대로 왜 오셨는지 구체적인 답이 없는데요?

안경환 : 다시 말하지만, 제가 당시에 별다른 특징이 없었어요. 담임선생님이 법대 가야 된다고 하신 게 컸어요. (일동 웃음) 이분도 해방 이후에 약간의 혁신계 성향을 가지신 분이셨는데요, "네 집에서도 아버지를 봐라", 그래서 걱정을 하셔서 그런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물론 속으로는 법대가 커트라인이 제일 높으니까 법대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다른 대안은 현실성이 없다, 네가 다른 데 가면 뭘 하겠느냐, 그러나 법대 가면 선택여지가 많다. 굳이 판·검사 안 해도 졸업하고 나면 생활이 좀 편하고.

이우영 : 대학 들어오신 후에는 공부나 생활이 어떠셨어요?

안경환 :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입학한 때가 1966년인데요, 1학년만 열심히 했습니다.

김종철 : 그 당시 교수님 사진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백바지를 입고 찍으신 걸 제가 봤습니다.

안경환 : 그 사진은 제가 졸업하고 서른 살에 찍은 거예요. (웃음) "서른 즈음에." 그 사진은 두 번째 회사에 가기 전이었어요.

이우영 : 대학 1학년이 재미있으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안경환 : 옆에 문리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쯤 해서 전과해 볼 생각도 했어요. 법은 잘 알지도 모르면서 그랬죠. 사실 법 공부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있었고요, 1학년 때는 전공은 아직 안 들어갔는데요, 선배들을 보니깐 분위기가 좀 그랬고, 법 공부하고 나서 앞으로 뭘 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들이 막막했죠. 판·검사 길은 알았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해보니깐 힘들고, 재미도 별로 없고. 졸업할 때 사법시험도 한번 봤어요. 발표도 보지 않고 군대에 갔는데 당연히 떨어졌죠.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될 리가 없었죠.

한인섭 : 전과하면 무슨 과를 가시려고 했습니까?

안경환 : 그때 역사를 하고 싶었어요.

한인섭 : 문학이 아니고요?

안경환 : 네. 그래서 선생님도 미리 만나고, 전과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결국은 못했어요. 입학시험을 다시 볼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한인섭 : 법대 재학시절을 왜 그렇게 심드렁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웃음)

안경환 : 솔직히 그랬으니까요. 나중에 와서 학생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저도 역할을 좀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름대로 미안한 죄책감도 들고요. 당시는 유신 이전이어서 노골적인 탄압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서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단체활동이 내 성향에도 맞지 않고 아버지의 존재가 주는 부담이 컸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했어요. 다른 사람과 달리 내 경우는 아버지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고. 그래서 술이나 먹고 놀고, 산만한 독서와 약간의 기행도 하고. 학교 공부는 중간 정도 했어요. 왜 법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빨리 법대를 졸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김종철 : 말씀 나온 김에, 그때 대학분위기는 어땠나요?

안경환 : 당시 한일회담 전후하여 데모가 있었고요. 67년 교련이 시행되고 삼선개헌 전후하여 데모가 있었지요. 학생들의 무드는 낭만 반, 정부에 대한 반감 반, 이렇게 섞인 시기였고요. 특정한 몇 명 빼고는 전반적으로 민주화 일에 투신하지는 않았습니다. 데모를 주도한 학생들도 곧 사법시험을 보고 별 고민 없이 공안검사가 되는 일들도 많았고요. 일종의 낭만이 있었어요. 나중에 크게 이름이 난, 조영래나 장기표, 이신범과 같은 몇 사람 정도가 시종일관 같은 길을 걸었을 정도지요. 저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기에 고생도 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2학년 때 문리대 강당에서 '젊은이들의 양지'라는 KBS 라디오 공개방송 프로그램을 녹음했어요. 제가 법대 대표로 김상철 변호사랑 같이 떠밀려서 출연하게 되었어요. 원래 미리 짜여진 대본이 있었는데, 저랑 김상철 변호사가 대본에 없는 얘기를 해서 학생

처장님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나중에 종로 5가에 불려가서 혼도 나고 그랬는데, 저는 안 맞았는데, 그 친구는 좀 맞았답니다. (웃음) 제게는 "너는 그런 거 하면 바로 도표에 들어간다"라고 하더군요. 그 정도였어요. 어쨌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간 건 아니고, 낭만적 데모여서 죄책감은 좀 덜했어요. 그 다음에 군에 가서 첫 휴가를 나왔는데, 그게 70년 11월이었어요. 그때 전태일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조영래 평전>에 썼다시피, 그때 마음속에 부채의식이 있었어요. 당시 전태일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법대생이 주도적으로 나섰지요. 최종고 교수도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 고생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당시나 나중에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인섭 : 선생님 글을 보면 그때 대학분위기가 낭만적인 시대였던 것처럼 쓰고 계신데, 인문학적 향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마치 있었던 시대인 것처럼 글에서 풍기고 있는데요?

안경환 : 그렇죠. 그 당시 저는 기본적으로 졸업 이후의 제 역할에 대한 개인적 신념도 없었지만, 실제로 데모도 낭만적 분위기가 컸어요. 어떤 의미에서든 체계적인 데모는 거의 없었어요. 72년 유신, 74년 민청학련 사건 이후에야 결연한 태도를 갖춘 학생운동이 나왔지요. 우리 시대에는 과도한 낭만이 에피소드가 될 정도였어요.

〈한국, 독일, 미국의 헌법 사이에서〉

이우영 : 이제 학부 이후로 가볼까요? 유학을 가시기 전, 군 이후 사회생활이랑 미국에 유학 가시게 된 계기를 여쭙겠습니다.

안경환 : 군대를 가게 된 숨은 동기 중 하나가요, 월남을 갔다 와서 작가를 해볼까 하는 막연한 꿈이 있었어요. 작가가 되려면 체험이 중요하지요. 특히 이병주 작가를 65년에 처음 접하고 나서는, 아버지 시대에 비해 체험이 모자란다는 열등감이 많았어요. 작가가 되려면 최소한 전쟁터를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는 전쟁 후의 비참한 삶은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이유로 월남에 좀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월남을 못가고 제대하게 되었어요.

당시 법대 졸업생들은 군대를 안 가기도하고, 쉽게 연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러기는 싫었습니다. 입대를 연기하거나 기피하면서 사법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은 '큰 대의를 위해서는 작은 불법은 눈감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기도 했는데, 저는 도저히 그런 위선을 용납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도대체 판·검사 되겠다는 사람들이 병역기피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내가 판·검사가 되겠다는 신념이 없었으니 더욱 냉소적으로 비치기도 했겠지요.

제대 후에 작가가 못되면 기자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대하고 나니 신문사에 들어갈 분위기가 영 아니었어요. 동아사태(언론자유 수호, 광고파동, 기자 대량축출)가 날 정도로 언론도 억압적인 분위기였어요. 한 신문기자 선배로부터 여기는 들어올 데가 아니다, 차라리 대학원에 들어가라는 조언을 듣고 대학원에 들어갔죠. 그때가 73년이었는데, 동숭동 캠퍼스로요. 들어가서 전공을 정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그때 성향이 역사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공법, 그중에서 헌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나라의 민주화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인섭 : 미국 가기 직전의 대학원 생활은 어땠나요? 학교 분위기도 늦가을 같은 스산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안경환 : 당시 헌법교수는 김철수 교수님 한 분만 계셨어요. 그때는 독일유학이 당연하고 정통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어 공부도 하고 독일헌법 코멘타르도 읽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깐 잘 모르면서도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이게 도대체 우리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김철수 선생님께 감사드릴 점은 그때 그 누구보다도 권력구조보다 기본권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석사논문을 독일헌법 제20조 제4항 저항권에 대해서 쓰려고 직전에 귀국하신 고려대의 심재우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분의 박사논문 제목이기도 했지요. 심 교수님은 논문을 잘 보여 주지 않으려고 그러셨어요. 김성식 선생님 찾아가서 소개장 겸 보증서를 받아 심 교수님께 갖다드리니깐 그제서야 조심스럽게 빌려주셨어요.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당시는 복사기도 귀했던 시절이라 힘들게 복사한 후에 돌려드렸지요. 그때 조사해보니까, 미국에서도 몇몇 주의 초기헌법에 저항권이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한편, 당시 언론검열이 심하던 시기였지만, 중앙도서관에서 '타임'지, '뉴스위크'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 관련된 기사는 시꺼멓게 지운 채로 말이지요. 그

런데 뜻밖에도 어떤 판사 한 명에 관련된 기사가 많더군요. 당시 우리는 판사를 그렇게 대중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는 분위기가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주요 시사잡지에 판사의 기사가 크게 등장할까 궁금했었어요. 그 판사가 바로 윌리엄 더글라스(William O. Douglas, 1898～1980) 대법관이었어요. 그런데 대학원 수업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인 학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얼마 전까지 중앙대에 재직하던 이상돈 교수였어요. 그에 비하면 엄청나게 실력과 역량이 뒤진다는 열등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미국의 위헌법률심사제로 석사논문을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는 학부시절만 해도 교수가 될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수는 너무나 고고하거나 속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의도적으로 현실과 거리를 두는 분도 있었고, 사회적인 사건에서 당당하지 못한 분도 있다고 보았어요. 그런데 대학원에 들어온 후로는 점차 교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독일헌법에는 흥미가 생기지 않았어요. 너무나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를 푸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시민혁명의 역사가 없는 나라의 관료적 전통이 너무 강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더글라스 판사에 관심을 갖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리스월드 판결(Griswold v. Connecticut, 1965년)도 읽어봤는데, 보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헌법이 단순한 장식물이나 죽은 문서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인다는 강한 느낌도 받고. 그 판결에서처럼 피임약의 규제가 헌법문제가 되다니, 이런 쟁점을 다투는 것을 보면서 헌법이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푸는 수단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보니 자연 미국헌법에 대한 관심이 깊어진 것이지요. 그러다가 대학원을 못 다니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른 개인사정이 가중되었어요. 게다가 교수가 되었으면 하는 막연한 기대만 있었지 구체적인 길도 모르고, 희망도 없고, 답답하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갔지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많이 배웠어요. 그전까지는 '기업은 탐욕의 시장이다, 선량한 인민을 착취하는 비인간적인 괴물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선입관이 강했는데, 실제로 몸을 담고 보니 또 다른 역동적인 재미가 있어요. 경제로 나라를 만든다는 생각, 산업화의 논리 속에 들어가게 되고, 신이 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랬어요. 제 인생에서 전형적인 교수의 길과 다른 경험을 하고 교수가 된 것이 큰 의미가 있었어요. 첫째 군대에서 사병생활을 했다는 것과, 회사생활을 그나마 중견간부까지 했다는 것, 이게 아마 다른 분들하고는 다른 점이겠지요. 당시는 그게 부담이었는데, 나중에는 큰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생활〉

김종철 : 회사생활은 몇 년쯤 하신건가요?

안경환 : 거의 6년. 부장되기 직전까지 했어요. 당시는 거의 6개월마다 승진하고 그랬습니다. (웃음) 그때쯤 해서 삼성물산이라는 큰 회사에서 처음으로 과장직을 공개모집했는데요, 결국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필기에서 1등을 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당시의 전설적인 회장이 직접 면접에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제 관상이 "기업에 오래 있을 사람이 못돼"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로 갔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과연 회사가 내 평생직장인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어요. 마음속에 걸린 양심적 부담 중 하나가요, 회사는 불법을 해야 돼요. 탈세나 투기가 그런 건데요, 자기를 위해 작은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이 회사를 위해 큰 부정을 저지릅니다. 그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깐 부정에 대해 둔감하게 되고, 마음속에 도덕적 윤리적 저항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더 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든지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나마 회사에서 저를 붙잡을 마음이 있을 때 회사를 떠났습니다.

한인섭 : 회사는 어디 어디에 계셨나요?

안경환 : 처음에 입사했던 작은 회사는 지금 망하고 없습니다. 대학원을 그만두고 잠깐 고등학교 선생을 했어요. 당시 제가 졸업할 때, 사회과목 교사가 많이 모자라서 한시적으로 서울법대 졸업생의 경우 신청하면 교사자격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따라 서무과에 갔다가 수재의연금을 내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당시 수재의연금을 내는 학생이 적어서 서무과장이 몇 명 학생들한테 좀 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마침 제가 친구 따라 갔다가 붙잡혀서 얼마를 낸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게 좀 미안했던지 졸업할 때 우리를 불러서 신청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했더니 2급 준교사 자격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친구가 근무 중이던 경기도 어느 학교에 영어선생을 하러 갔지요. 그런데 친구는 곧바로 떠나 서울로 옮기더라고요. 나는 이 친구 때문에 간 건데 말이죠. 후일 '남민전' 사건이 일어나 나도 연루될지 몰라서 자신이 떠났다고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나는 친구도 떠나가고 재미도 없고 해서 그만두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 회사가 망하고 나중에 큰

회사로 스카우트돼서 갔지요. 그 회사가 선경(지금의 SK)입니다.

한인섭 : 선경에 재직하시면서 외국여행을 많이 하셨다고 하던데요?

안경환 : 정부가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종합무역상사 중의 하나였어요. 그때는 복수여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맡은 업무 중에 시장개척, 해외지사 관리업무가 있었습니다. 사장도 법대출신이셨고, 그래서 실제 능력보다 좋은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국제선 비행기를 많이 탔죠.

한인섭 : 당시 영어능력, 기업능력, 법률능력 중에 가장 도움된 것이 무엇이었나요?

안경환 : 모르겠어요. 여하튼 비교적 열심히 했죠. (웃음)

한인섭 : 열정인가요?

안경환 : 네, 열정이요. 그 다음에는 아이디어들을 내고 한 것이 많았어요. 나중에는 보니까 다 불법이었어요. 가령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 현금차관을 들이는 것인데, 그러려면 정부가 보증을 서야 되고, 그러면 이 회사는 절대로 망한지 않는다, 또는 당장 돈이 급할 때는 사채 말고 공무원 연금을 로비해서 갖다 쓰는 것, 이 모든 것이 불법의 아이디어들이었죠. (일동 웃음) 이런 식의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돼서 안 되겠다 생각하게 된 거죠. 길게 생각하면 내가 과연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러던 차에, 회사 중역 중에 잘나가던 한 분이 갑자기 간첩으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어요. 학생시절에 학생운동에 관여한 이력이 있었는데 북한에 친척이 있었나봐요. 어느 순간 공권력에 대한 사적부문의 무력감이 느껴졌고요. 당시는 제가 잘나가는 편이어서 적(?)들이 많았어요. 따라서 온갖 모함이 따랐어요. 오래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떠날 생각을 했죠.

〈더글라스, 갤러웨이, 산타클라라〉

한인섭 : 이제 법학의 길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미국 유학 출발할 때 그 다음 대책은 가지고 계셨나요?

안경환 : 퇴직금이 좀 있었고, 장학금을 주는 곳 찾아서 간 곳이 산타클라라 로스쿨(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이에요. 보통 잘 택하는 학교는 아닌데요, 장학금 주는 쪽으로 간 거죠.

한인섭 : 처음에 간 곳이 산타클라라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가서 산타클라라에 정착할 때까지 무슨 과정을 거쳤나요?

안경환 : 1980년에 캘리포니아에 갔어요. 처음에 가서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녔죠. 2년제 무료 대학이었지요. 영어도 제대로 배우고 셰익스피어도 정식으로 들었어요. 당시 영어선생님이 스탠포드에 출강도 했는데 그분 주선으로 스탠포드에 비정규생으로 가서 심화영어도 듣고 했죠. 미국에 가서 보니깐, 한국에서 막혀 있던 온갖 정보가 다 널려 있더라고요. 얼마나 신나던지. 80년 광주사건 직후였어요. 그해 말 '타임'지가 그해에 세계에서 일어난 가장 비인간적 사건으로 두 번째로 광주학살을 들더라고요. 1위가 엘살바도르학살이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유명한 반전가수 존 바에스가 파리 노트르담 광장에서 광주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래도 불렀어요. 미국 갈 때, 김성식 선생님이 "너, 분명히 오는 거지?"라고 다짐하셨지요. 여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면, 늘 만나서 얘기 주고받던 사람이 조갑제, 조영래였어요. 그때쯤에는 사실 한국에 들어와서 살 생각이 절실하지는 않았어요. 한국에 금방 들어올 것 같았으면 S.J.D.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잘 맞지 않았어요. 컬럼비아대학에 일본법 전공자로 S.J.D. 신청을 받겠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내가 못하겠다고 했어요. 이미 미국 영주권도 받았고,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곳에 정착할 여지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권하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 미안한 생각이 들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작심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번역한 것이 갤로웨이의 <법은 누구편인가>(1985)였어요. 이때쯤 미국 법제도를 알게 되면서 더글라스 판사에 빠져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더글라스의 글을 모조리 다 읽었죠. 그것을 바탕으로 86년에 <미국법의 이론적 조명>이라는 단행본을 냈습니다.

한인섭 : 그때 미국에서 언론 기고를 자주 하시지 않았나요?

안경환 : 네, 교포언론에 많이 했죠. 재학 중에도 하고 졸업 후에도 계속하고요. 일본에서 두 해 여름을 지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일하러 간 거였어요. 베이커 앤 맥킨지(Baker & McKenzie) 도쿄사무소에서 일본판례를 영어로 옮기는 일에 리서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갔죠. 제가 필라델피아의 유펜(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LL.M. 마치고 J.D. 프로그램으로 들어간 곳이 산타 클라라였는데 이 학교가 여름에 도쿄에서 해외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거기서 마침 만난 사람이 히메네스(Philip Jimenez) 교수였고, 그 인연으로 알렉산더(George Alexander) 학장까지 알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장학금을 받고 가게 됐죠.

한인섭 :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안경환 : 처음에 유펜 갈 때는요, 혹시 내가 회사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기업변호사가 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기대도 했었죠. 그런데 유펜 가기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온갖 세상의 정보를 접하고 나니깐, 기업에서 일할 때와는 달리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유펜에서도 회사법보다는 역사, 문학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결정적 계기가 생겼어요. 유펜에는 와튼스쿨과 로스쿨이 함께 운영하는 회사법 강좌가 있었어요. 담당교수는 당시 로스쿨학장이었는데 장래를 상담하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는 머리는 좋은 것 같지만 큰 결함이 보인다. 머릿속에 숫자가 들어있지 않다. 돈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것 같다. 기업변호사로 성공하려면 네가 건네는 법률자문에 따라 회사의 재무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머릿속에 숫자로 딱 떠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안 되겠구나, 역시 신념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그분이 잘 보신 거죠. 삼성의 선대 회장처럼. (웃음) 더글라스도 초기에는 예일 로스쿨에서 회사법의 대가였잖아요. 그분도 판사가 되고 나서 소수자나 민권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깐 S.J.D.는 안 되고, 마침 일본에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번역도 하고, 그러다가 히메네스 교수를 만나고 그분의 주선으로 산타클라라로 가게 되었어요.

미국사회에 살려면 미국법 전반을 알아야 하기에 J.D. 코스를 밟게 되었어요. 당시에 미국법원은 사회개혁의 선봉장이자 인권의 보루로서 많은 칭송을 받고 그랬지요. 60, 70년대에 많은 민권판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중 핵심인물이 더글라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좀 더 크게 볼 때, 전태일 사건 이후 우리나라에도 노동자

인권문제가 있었지요. 미국의 선례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강했어요. 그런데 미국헌법의 가장 큰 결점이 사회권조항이 없다는 거였어요. 미국이 자본주의로 대성하고 사법왕국이 되었는데, 자본주의의 가장 취약점인 빈부격차의 문제를 법원이 어떻게 다루었는지 관심을 두게 되었어요. 미국헌법을 극도로 찬양하는 쪽은 '자유의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반면에 사회권에 관한 언급은 거의 나오지 않잖아요. 이즈음 어떤 학자가 대법원 판사의 성향을 분석하는 일련의 논문을 내고 있었어요. 제가 미국가기 전에 읽었던 글들의 저자 중에 허먼 프리체트(Herman Prichett)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루스벨트 대통령시절의 판결을 분석하여 당시 판사의 성향을 진보냐 보수냐로 판정했어요. 미국에 가서 보니깐 갤러웨이(Russell W. Galloway)라는 사람이 미국연방대법원의 전 역사를 통틀어 이 주제로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었어요. 컴퓨터가 사용되기 전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깐 그분은 학부에서 통계학을 전공했더군요. 당시만 해도 통계적 방법으로 판결을 분석한다는 'jurimetrics'는 낯설었어요. 물론 '법현실주의'나 '브랜다이스 브리프'(Brandeis Brief)가 나오기는 했지만, 통계적·수학적으로 판사의 성향을 분석한 글은 거의 없었어요. 갤러웨이가 프리체트의 방법론을 가지고 미국 전체 법원 판사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책으로 나오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단행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어로 번역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전까지 우리는 '위대한 반대자 홈즈' (Oliver Wendell Holmes, Jr.) 대법관 한 명에만 에피소드적 관심을 가지고 흥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전공이 무엇이든지 간에 갤러웨이의 책은 기본자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떠나 살게 될지 모르지만 30여 년 나를 키워준 고국에 남길 선물로 번역서 하나를 남긴다면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 책을 택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산타클라라 대학에 계셨어요. 산타클라라로 가는 더욱더 결정적 계기가 되었지요. 1학년 마치고 그 책을 번역했습니다. 오늘날과는 달리 LL.M.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응시자격도 없었어요. 캘리포니아는 J.D.를 마치지 않으면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갤러웨이의 영향을 받아서 대법원이 있는 워싱턴 D.C.에 가서 시험을 치렀어요. 이분은 연구년에 실제로 연방대법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나중에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지구 연방항소법원의 사건을 맡았을 때는 제가 옆에서 잡일도 도와드리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래서 워싱턴 D.C.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에 그 자격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변호사시험을 본거죠. 그러니깐 재학 중에 변호사자격을 얻을 수 있었고, 더 이상 학교는 다닐 필요는

없었어요. 학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장학금을 줄 필요도 명분도 없었지요. 저는 미국법 전반을 더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대학에는 소수자를 위한 특별입학제도가 있었어요. 정원의 10% 정도인데, 경제적 약자, 외국학생은 대부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입학하지요. 그런데 산타클라라 대학이 예수회 소속 학교잖아요. 그렇다보니 퍼시픽 아일랜드 출신 학생들이 더러 있었어요. 교구의 추천으로 특별입학을 시켜주면서, 원하는 경우 상급생 중에 튜터를 붙여줘요. 그래서 제가 튜터를 하면서 지냈죠. 일종의 봉사장학금을 받게 된 셈이지요. 저한테 튜터링을 받은 학생 중에는 어느 나라의 현직 대법원장도 있습니다. (웃음) 그러면서 더글라스를 쓰게 됐어요. 그때는 한 사람한테 깊이 빠지니깐 자꾸 그 생각만 하게 되고, 더글라스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말도 하기 싫을 정도였어요. 이따금씩 더글라스의 꿈을 꾸기도 하고. (웃음) 그의 저서를 전부 다 수집하고, 어떤 경우에는 100마일쯤 차를 몰고 가서 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오기도 했지요. 그때는 인터넷 자료조사가 안 되었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의문점이 대개 다 풀리더라고요. 단순히 표현의 자유, 평등권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국제문제 등. 더글라스는 다방면에 걸쳐 글을 썼지요. 세계를 직접 여행하기도 하고. 6.25 전쟁 중 한국에도 왔었어요.

더글라스를 깊이 읽으면서 이게 내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 사람의 로맨티스트적 성향도 나한테 맞다는 생각조차 들었어요. 몇 년 동안에 더글라스를 통해서 미국의 법제를 보게 된 셈이었어요. 제가 S.J.D. 논문을 쓰게 된다면 그를 대상으로 써야겠다는 마음 자세로 논문의 형식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기를 써보려 하다가, 그 나이에 전기를 쓰기는 좀 그렇고 해서, 그렇게 낸 단행본이 <미국법의 이론적 조명>이예요. 지금 되돌아보니 그때 내가 굉장했구나 하는 생각조차 들어요. (일동 웃음) 더글라스를 통해서 미국법의 체제를 보게 되니 자연스럽게 인권, 소수자 문제, 그리고 그때까지 전혀 모르던 미국 원주민 문제, 환경보존문제 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사람 말 중에 “물고기도, 산도, 나무도 투표권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멋있잖아요! (웃음)

한인섭 : 결론적으로 갤러웨이와 더글라스의 창문을 통해 미국사회도 이해하고 미국법도 이해하고, 자신의 학문적 관심사, 앞으로 나아갈 바를 얻어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안경환 :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죠. 그때는 내가 한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생각만 있었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는데, 내 나라 후배들이 공부하기 위한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는 쪽으로 정해진 것이지요. 그래서 객관적 자료로 선택한 것이 <법은 누구 편인가>이었고. 또 소수자 입장에서 전체 시스템을 바라본 것이 더글라스 논문집이었지요. 결국에는 미국법의 이해를 통해 한국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관한 간접적인 자료가 된 것이죠.

한인섭 : 이 책들은 다 한국어로 쓰신 거죠? 한국에 안 들어오겠다면서, 한글로 이런 책들을 쓴 이유는 뭔가요?

안경환 : 제가 안 들어오겠다는 것이 아니었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뭐할지, 받아줄 데는 있을지도 막연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고민한 흔적을 하나의 자료로 만들고 싶었고, 내 나라에 대한 책임 내지 사명도 있었고요.

한인섭 : 저는 청년시기 초기의 문제의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00마일씩이나 되는 거리를 차를 몰고 가서 자료를 구해오는 그런 정열은 청년시절에나 나오는 거잖아요.

안경환 : 네. 김성식 선생님은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와서 마땅히 할 일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주류에서 경쟁하려면 성적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저한테는 그런 게 별로 큰 의미가 없었어요. 내가 상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니깐 교포사회를 계몽시키는 것도 그 하나이더군요. 그래서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인섭 : 칼럼을 많이 쓰셨죠? 당시 미국법을 소개하는 글을 많이 쓰셨던데, 제가 글들을 보면서 참 열심히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미국변호사구나, 참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안경환 : 칼럼은 85년도부터 썼어요. 일부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매주 몇 군데씩 썼어요. 교포들에 대한 계몽과 다른 하나는 내 나라 생각이었습니다. 더글라스를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한국어로 쓴 거예요. 영어로 글을 쓰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죠. 출판할 곳도 마땅치 않고 미국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진 일들이니까.

한인섭 :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셨습니까?

안경환 : 전형적인 변호사 생활은 못하고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법률구조공단 지부 같은 데서 일을 했어요. 갤러웨이 교수를 도와서 제9지구 연방항소법원 사건 관련 리서치를 좀 했지요.

한인섭 : 한국과 다른 미국의 로스쿨의 모습을 접하시고, 그 뒤에 우리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자고 시종 주장해오셨는데, 그때 보시고 체험하셨던 미국 로스쿨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안경환 : 그게 큰 개안이 되었어요. 하나는 학부에서 법을 전혀 배우지 못한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원 과정인 로스쿨에서 바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 의문이 미국 로스쿨을 보니까 다 해소가 돼요. 학부 때 법을 안 배우고 다른 분야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이 자신이 배운 전공 위에 법을 결합해서 하는 지적 훈련, 그걸 만들어주는 선생들의 지적 수준에 대해서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엄청 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는 모든 중요한 사회적 현안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법률가가 등장해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사의 경우에도 최종 결정 단계에는 변호사들이 관여해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가령 새로운 형태의 과학이 등장해서 그것이 사회제도로 문제될 때, 정책문제에서 변호사들이 등장해서 논의를 하더라고요. 이거야말로 대학원 로스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구나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학교 시험 중에 어떤 교수는 증거법 과목 문제로 셰익스피어를 내고 그래요. 그러니깐 '법과 문학'의 담론이 성립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지요. 법학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대학에서 배우는 하나의 분과 학문이 아니고 모든 학문의 종합학문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깨우치게 되었죠. 두 번째는 거기서도 개념법학(black letter law)을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답을 스스로 찾도록 만드는 훈련을 시키는, 흔히 말해서 소크라테스식 방법론(Socratic method)을 사용하는데, 이 방법론이 지적 훈련방식으로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지적 훈련이 결국은 미국연방대법원 판결문

처럼, 정형화되어있지 않고, 창의적인 스타일의 문서로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대단히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연방대법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강한 인상을 받은 것이 로클럭(law clerk)제도였어요. 우리는 선생도 법원도 층층이 세대에 따라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판사가 종신직인데, 나이 많은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생각은 과거의 경험에 바탕하여 형성된 것일 테고, 현재 내리는 판결의 구속력은 장래를 향하게 되잖아요. 그 과거-현재-미래의 갭(gap)을 어떻게 메우는지가 의문이었는데요. 로클럭제도가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로스쿨을 졸업하고 바로 연방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의 판사에게로 가서 리서치 임무를 하고 판결을 도와주는 것이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는 거죠. 판사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젊은 피를, 시대정신을 공급받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헌법판결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한인섭 : 우리 로클럭제도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거의 보조원처럼 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평이 일각에 있는데 말이죠.

안경환 : 미국도 활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요. 실제로 판결문 초고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 결론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판사에 따라서는 단순한 비서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로클럭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공급 받겠다고 생각하는 판사도 있더군요. 나중에 내가 교수가 되어서도 학생들과 가까이 지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도, 타고난 성향도 있지만, 이런 미국의 제도에서 느낀 바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어요. 즉 내가 후속세대에게 뭔가 영향을 주겠다거나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학생들로부터 배우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뭘,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을 가지려고 한 것은 미국에서 배운 것 같아요. 한 예로 독일의 경우에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서 때로는 개인숭배에 이르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지식과 학문의 객관화가 잘 안되더라고요. 미국은 학생과 선생의 관계로 시작해도 과정만 끝나면 동등한 차원에서 교류가 되더군요. 때로는 오히려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옛날 제 선생님들이 저를 동료로 대해주더군요. 이러한 평등 교류가 과거의 신분에 기초한 소통의 장벽을 해소하는 데 유용하다고 믿게 된 것은 미국의 제도로부터 배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인섭 : 지금 여기 계신 제자 분들은 선생님에 대한 개인숭배를 안 하고 있지요? (일동 웃음)

김종철 : 그때 로즈 버드(Rose Bird) 대법원장 선거에도 관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원봉사로요.

안경환 : 로즈 버드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장일 때 주민불신임투표를 당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대 글도 쓰고 커뮤니티에서 활동도 하고 그랬지요.

김종철 : 그때가 어떤 시점이었습니까?

안경환 : 그게 1986년의 일인 것 같아요. 1977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Jerry Brown)에 의해 임명된 로즈 버드 대법원장이 사형을 거부하는 등 너무 진보적인 성향을 띄니까, 보수세력이 결집해서 주민소환을 실시했어요. 저는 소환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했지요. 그건 제 선생들인 갤러웨이나 알렉산더(George Alexander) 교수도 그랬어요. 그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에드워드 케네디와 함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어요. 그 사람을 지난 2005년에 제가 미국에 가서 다시 만났어요. 그때 뜻밖에도 오클랜드 시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후 검찰총장을 거쳐 최근에 다시 주지사가 되었더군요.

〈영미법 전임, 소장 교수의 경험〉

이우영 : 미국에서 수년간 학업과 변호사 활동을 하신 후 1986년에 귀국을 하셨습니다. 귀국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안경환 : 한국에 못 돌아온 것이지 아주 떠났던 것은 아니었지요. 항상 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김성식 선생님이 86년 3월부터 경희대 평화대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주선하신다며 당시 조영식 총장과 면담 일정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일시 귀국했는데 김 선생님이 갑자기 돌아가셔 버렸어요. 아쉬움 속에 미국으로 되돌아갔는데 6개월 후에 뜻밖에도 서울대에 영미법 교수 자리가 났어요. 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으나 잠정적인 후보 중 한 명이었죠. 교수 인사에는 언제나 학내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도 이젠 영미법 전담교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미국 J.D. 출신을 뽑자는 원칙을 정했다고 했어요. 저 이전에도 미국 J.D. 출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학생시절에 이미 김석조 교수도 있었고, 저보다 6개월 먼저 임용된 김건식 교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생각이 있으면 지원해 보라고 연락이 왔는데, 설마하면서 지원했는데, 됐어요. 당시만 해도 미국변호사를 대단하게 생각했는지 과연 내가 서울로 올까, 미심쩍어 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물론 기꺼이 왔죠. 행여나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영주권을 바로 반납하고 왔어요.

한인섭 : 오셔서 초기에 맹렬하게 학술활동을 하시면서, 책 출간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새내기 교수로서의 입지를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안경환 : 그때까지 교수가 되신 분들은 대부분 대학원 진학 후 전형적인 교수의 길을 밟아서 임용된 분들이잖아요. 제가 예외가 된 셈이죠. 내 바로 앞의 박세일 교수도 예외에 속하는 편이지요. 그 당시 학장님이 뭘 기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경험을 가진 부분을 살리는 방법도 생각했고, 나름대로 비전형적인 학문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계셨겠죠.

그때 이미 <법은 누구 편인가>(1985)를 번역해 냈고, 더글라스 책도 냈으니, 아주 신인은 아니었지요. 그리고 나서 즉시 프리드만(Lawrence M. Friedman)의 <미국법입문>(1987)을 번역해 냈습니다. '영미법'이라는 것이 대단히 애매하잖아요. 영국법과 미국법이 다른 것인데. 그래서 우선 기초자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미국법입문>이 그런 작업의 일환이었죠. 서원우 교수님이 이미 학술진흥재단에 지원신청을 하셨던 터라 발령받기 전 미국에서 거의 번역을 마치고 들어와서 마무리를 했어요. 제가 도와드리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역으로 출판하게 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프리드먼의 <미국법의 역사>를 단독으로 번역하게 되었죠. 그때 번역작업은 세부전공에 무관하게 기초가 될 참조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했기에 주력했었어요. 제가 번역작업을 하는 이유로는 세 가지 정도 들 수 있지요. 대체로 외국 가서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세부적인 전문분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저처럼 세부적인 전공에 지장을 덜 받은 사람은 기초자료를 소개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어요. <법은 누구 편인가>, <미국법입문>,

<미국법의 역사>(1988)가 그런 류의 책들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책을 번역하면서 법률용어나 한국어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정확도, 법률문장에 대한 훈련을 스스로 쌓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학자는 번역만이 아니라 논문도 쓰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주제에 관한 논문에 주력하면서도 때때로 머리를 식히는 좀 단순한 작업도 필요했는데, <지혜의 아홉 기둥>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만 해도 외국에 가면 시차 때문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억지로 잠을 청하느니 번역을 했습니다. 일종의 시간 때우기라고 할 수 있죠.

처음 학교에 오니깐 할 일이 많았어요. 서울법대 교수는 학문 자체의 즐거움도 있겠지만, 저처럼 사회경험을 하고 교수가 된 경우에는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법학교수로서 한국의 법학교육과 사법문화의 개혁, 법의 계몽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아카데믹한 측면에서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논문을 쓰고, 이를 계몽시키고 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자료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로 오니깐, 내가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배나 선생님 때문에 해야 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런 일은 적당한 범위에서 하고 그랬죠. 내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내가 가진 생각들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니, 선생님이나 선배에게 영향을 줄 수는 거의 없더군요. 그래서 후배와 학생들, 학교 밖 세상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학생들이 데모할 때도 북한이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환상이나 진지한 찬양을 가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좌익'이나 '빨갱이'는 전부 유신시대에 만들어서 민주의식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지 학생들이 진지하게 그런 성향을 가졌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중에야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 세대와 우리 세대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느끼는 정서적인 갭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영역, 소위 '과학적인 사회'에 관한 담론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은 내가 잘 몰라서 좀 더 성의있게 관심을 가지고 조언도 하고 배우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한인섭 : 87년 3월에 교수 임용되셨는데, 처음부터 약간 튀는 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0년대 초에는 한 달, 87년에는 일주일 간 신임교수들은 정신문화연구원에 입소 후 합숙하면서 일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어있었는데요. 부임 첫 학기 때는 좀 조신하게 있어야 되는데, (웃음) 입소를 거부하셨잖아요. 그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안경환 : 그때는 임용이 결정되면 정식발령이 받기 전에 가시는 분도 있고, 발령받은 학기 후 방학 중에 가는 분들도 계셨는데, 나는 후자였어요. 모두가 당연하게 가야 된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지 조사해보니깐 법적 근거는 없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소위 자원(自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원을 안 한거죠. 거부한 게 아니고요. (웃음)

한인섭 : 제가 86년도에 교수가 되고, 87년도에 갈 차례가 되었어요. 당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 교수들이 가라고 하면 갔는데, 저도 아무런 이의나 법적 근거 따지는 생각 하나도 없이 갔거든요. 안 교수님께서 안 가신 바로 그 프로그램에 갔는데요. 당시 대한민국 교수들이 다 그랬어요.

안경환 : 내 생각에는 별로 내키는 프로그램도 아니었고, 법적 근거도 없고요, 제가 번역하기도 했던 <반대의 자유>(1988)를 쓸 정도로 시류에 아무 생각 없이 휩쓸리기만 하는 것을 경계했던 더글라스를 공부하기도 했던 처지에서 처음 부임하는 법대교수로서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도 있었지요. 당시 서무주임이 좀 애를 먹고, 학장님도 좀 난처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불참사유로 "학회참가"라고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교무학장보가 백충현 교수님이셨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튀는 행동을 해도 은연중에 격려와 보호를 해주셨어요.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진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다음 해였어요. 한번 입소교육 안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6개월 후에 또 오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때는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지요. 내가 법적 근거도 없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것이라고 했더니 서울대에서 대규모 불참사태가 발생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전부 다 개별 연락을 받고 다 들어갔어요. 결국 저 혼자 마지막까지 안 갔어요.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그다음 해에 별 이유 없이 그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인섭 : 안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선례를 보여주셨군요. 당시는 다행히 88년 민주화 초입에 들어설 때입니다. 아마 안 교수님의 행동이 86년이었으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때가 87년 6월 항쟁 끝나고 7월이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군요. 그다음 해엔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신 것이고요. 다른 분들을 종용도 하고. 이게 전방입소 비슷하게, 신임교수 길들이기가 아닌가하면서. 그런데 이 제도가 88년 이후에 없어졌는데, 안 교수님의 주장이 여론의 긍정적 반향을 타면서 그런 게 아닌가 제 속으로 그렇게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안경환 : 그 다음부터는 신임교수 연수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결국 제도 말기에 객기 부린 셈이 되었는데, 그때 생각은, 임명장 받을 때 당시 총장에 대한 존경이 별로 없었어요. 정신문화연구원 원장이셨던 어떤 법학교수도 존경하는 분이 아니었고요. 제가 발령도 받기 전에 이미 서원우, 김철수 교수님과의 인연으로, 공법학회 간사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학회에 갔는데 학회의 고문인 그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예전에 쓰셨던 미국헌법 책의 개정작업을 도와달라고 하셔서 거부를 했어요. 왜 그랬냐하면, 이분이 옛날 중앙일보에 글을 쓰신 적이 있었는데,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제가 간선제여서 大同小異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나중에 이상돈 교수가 굳이 따지면 '소동대이'하다는 반박의 글을 <고시계> 잡지에 썼어요. 그래서 전부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연유인지 나를 부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내가 말을 좀 못되게 했어요. 이상돈 교수 사건도 있고, 내가 개정작업도 거부하고, 그러니 김철수 교수님께서 오해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당신이 직접 못하니깐 제자들을 시켜서 망신을 줬다는 식으로 해서요.

〈학장담당 학장보로서의 경험〉

한인섭 : 그리고 서울법대 학장직선제를 만드는 과정에도 관여하셨지요?

안경환 : 당시 분위기가 87년에 교수선언이 있었어요. 그때는 박세일 교수가 주도했는데, 나보고는 첫 학기에는 좀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름은 없었어요. 그때 분위기가 학내외 전반적으로 민주화의 요구가 있었고, 그중 하나가 학장직선제였죠. 그런 취지의 글을 소장교수들이 서명해서 총장에게 전달했었습니다. 총장실에는 박세일 교수와 다른 한두 분이 대표로 갔습니다. 이듬해부터 학장직선제가 시행되고 법대에서는 이수성 교수님이 첫 번째 직선 학장이 되셨죠.

한인섭 : 젊은 교수들은 몇 분 정도 참여하셨나요?

안경환 : 당시 교수 전체인원이 스물다섯 분 정도였는데, 아마 열 분 정도가 했어요. 그때 친선모임으로 관악산 등반도 갔는데, 이게 나중에 엄청난 음모를 꾸미러 간 것이라고, 저랑 박세일 교수가 음모의 주동자로 지목되기도 했어요. 사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한인섭 : 서울법대가 직선제로 하니깐 다른 단과대로 확산되었고, 그 이후 관행적으로 직선제로 제도화되었죠. 그러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토대 위에 총장직선제가 이루어지고요.

안경환 : 후세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역사적인 것으로 평가해 주시는데,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웃음)

한인섭 : 역사의 주역이라는 의식도 없이 하다보니깐 그렇게 된 건가요?

안경환 : 네, 나는 주역은 아닙니다.

한인섭 : 신임교수로 부임하시자마자 만 1년 지나서 학생담당 학장보를 맡으셨죠?

안경환 : 내 직전에 박세일 교수가 맡았던 자리였는데, 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본부 규정상 전임강사는 보직을 못 맡게 되어있었어요. 부교수 이상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조교수가 맡는다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전임강사였거든요. 그래서 본부인사에서 문제가 되고 했는데, 당시 학장께서 법대의 특이한 인사관행 때문에 전임강사가 된 것이고 경력은 충분하다며 물러서지 않아 본부에서 통과시켰죠. 그래서 바로 전임강사로서 보직을 맡게 되었죠.

한인섭 : 당시엔 학생학장보가 하는 일이 많았고 골치도 아주 아플 때인데, 신임교수에게 왜 맡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경환 : 그때는 맡겼다기보다는… 그 자리를 누가 자원해서 합니까? (웃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학장께서 요청을 하셨고, 학장님은 내가 여러모로 존경했고, 신뢰도 주셨기에 하게 되었죠. 학생들과 접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때 본부와 간헐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징계의 절차에 대한 당시의 관행에 대한 비판의 글도 쓰고 그랬어요. 그건 굳이 민주화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법대교수로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적 근거와 절차의 문제였습니다. 나의 그런 주장이 다른 대학의 보직교수들께는 대단히 튄다고 느껴졌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학생데모를 많이 할 때라 두 번 정도, 대학전체 차원에서 대규모의 학생징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농활지원비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총장실 점거한 적이 있었어요. 관련 학생들을 징계하는 데 학생징계는 소속 단과대학 교수회의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대생의 명단과 함께 징계요구가 왔어요. 문제된 학생이 현장에 있었는지 사실조차 파악도 안 되고 해서, 법대에서는 징계를 보류했어요. 다른 단과대에서는 신속하게 제적처분이 나왔어요. 학생에게 법적으로 방어할 기회도 안 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학장회의에 제가 대리 참석하여 문제를 제기했죠. 학장보, 그것도 전임강사 주제에 학장회의에서 내놓고 따지는 게 좀 그런 점이 있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나는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했고, 학장들께서 교육적 효과 등등 여러 가지 주장을 내세우기에 하나하나씩 반박했죠. 더군다나 제적처분은 사형과 마찬가지인데,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반성조차 않고 고집하는 것은 스승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학생징계와 적법절차'라는 제목으로요. 나중에 제적된 다른 단과대 학생들이 찾아왔기에 학교를 상대로 소송하라고 권했어요. 법대의 경우,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학생회 간부를 포함하여 많은 징계대상명단을 본부에서 내려 보냈어요. 아마도 학생회를 마비시키려는 의도였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 부분도 제가 지적을 했죠.

한인섭 : 당시까지 관행에 따라 제명 혹은 중징계로 처리되던 시대에, 소명기회를 제공하라,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된다,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라, 제명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제명되었나요?

안경환 : 법대 학생은 징계를 하지 않았고 다른 단과대생들은 제명되었죠. 그래서 제가 제명에 대한 비판의 글을 썼던 것이죠.

한인섭 : 다른 단과대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웠겠습니다.

안경환 :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개인이 아니고 법대의 학생담당 학장보였으니까, 제 생각을 미리 학장께 말씀을 드렸죠. 학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그래서 그건 기관의 입장이었습니다. 학장께서 이후 불편한 문제들을 다 막아주셨죠. 뒤에서 누가 뭐라고 하건 간에, 최소한 법대에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였고요, 저는 뭐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한인섭 : 좀 둔감하신 거 아닙니까? (일동 웃음) 민주화 이후에도 시국사건에 잡혀가는 학생들도 있었고, 경찰개입도 많고 했는데.

안경환 : 당시 제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은 이랬습니다. 다소 구식이지만 선생과 학생은 일종의 부모자식 내지는 형제지간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학생이 경찰에 잡혀가면 무조건 빼내야 된다, 학생이 잘못했으면 국가기관이 잘못을 다스리기 전에 선생이 계도하여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경찰이든지 검찰이든지 무조건 학생을 꺼내 와야 하고, 법원에 가면 탄원서도 쓰고 해서 석방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 학생이 실제로 국사범인지 여부는 그 다음 문제였어요. 실제로 학생들의 사상이 어떤지는 관심이 적었어요.

한인섭 : 잡혀간 이유가 시국문제에 관한 것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젊은이들의 사상보다는 자식 같은 마음으로 하신건가요?

안경환 :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와 생각이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활동을 감추는 경우도 많았는데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름이 거창하고 이상한 단체도 많았지만, 그게 어떤 노선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몰랐고요. 어쨌든 학생이 잡혀가면 무조건 빼내 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제가 계도각서를 써주고 학생을 데려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인섭 : 그때 학부생이었던 한상훈 교수가 법대 학장단의 정책에 관해서 한 마디 하시죠.

한상훈 :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학장단이 학생들 입장 많이 이해해주시고, 행사할 때도 많이 도와주시고. 다른 단대와는 다른 특이한 모습이었죠. 당시가 88년이고 해서 민주화가 진행 중이었지만 여전히 탄압적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때로는 교내에서도 점거라든가, 학내 갈등도 있었고요. 그런데 법대에서는 보직교수님들과 학생간에 서로 유화적으로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무래도 학생 시절이다 보니 갈등도 있고 그랬지만, 다른 대학 학생들은 법대를 굉장히 부러워했던 점이었습니다.

한인섭 : 지금 한 교수는 연세대 로스쿨의 학생부원장으로 계신데, 과거의 그랬던 경험이 본인의 학생지도 원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한상훈 : 지금은 로스쿨이다보니깐 정치적인 문제는 거의 없지만, 지금도 학생 입장에서 가급적 생각하려고 하고, 보직교수 회의할 때도 학생 입장을 배려하려고 하고 그렇죠. 학생들이 들으면 아니라고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웃음)

안경환 : 당시 다른 교수님들 중에는 내가 학생들하고 너무 가깝게 지낸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학생들이 그다지 순수하지 않다고 경고하는 외부 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 그분들은 학생운동의 방향과 성향, 그런 것들에 대해 나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나한테 직접 얘기는 안 해주셔도 말이죠. 그런데 나는 그런 일에는 관심은 없고, 성장과정의 학생에게 생각의 시행착오는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유명한 신문사의 중견 언론인이셨던 어떤 선배가 어떤 졸업생의 학생시절 배경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길래, "나는 학생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를 해줄 수 없다, 신문사가 뭐하는 곳이냐, 비판정신을 가진 게 좋은 게 아니냐"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그게 제가 가진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영국법의 체험과 지식〉

한인섭 : 다음에 보직 마치자마자 영국으로 가셨더라고요. 미국법을 전공하시다가, 영국으로 가신 이유는 뭐였나요?

안경환 : 제가 '영미법' 담당교수로 발령받았잖아요. 그런데 '영미법'이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고 무책임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령 서양 사람들이 '韓日法', '韓中法'으로 부르면 우리가 수용하겠느냐는 거지요. 영국과 미국의 법제를 보면, 같은 점보다는 다른 게 훨씬 더 많아요. 그게 한국법과 일본법의 차이 정도의 유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영국법과 미국법이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기본적 인식을 전제로, 학문적으로 분리 탐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배운 영국법은 수용된 커먼로 정도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영국법을 공부하고

싶어서 갔지요. 쉽게 말하자면 '앵글로-아메리칸' 중에 '앵글로' 부분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었지요.

그리고 영국행의 숨은 의도 중 하나는 셰익스피어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었어요. 영국헌법과 커먼로의 발전사를 공부하면서, 대표적인 영미 학자들이 쓴 제도비교론을 소개했어요. 옥스퍼드대의 아티야(Patrick Atiyah)와 코넬대의 서머스(Robert S. Summers)가 영국법과 미국법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한 책을 1987년에 냈는데, 이 책을 시발점으로 삼아 양자의 차이점에 관하여 공부했어요. 사실 일본이 '문명개화'를 했을 때, 외국법으로는 '영국법' 교수자리가 제일 먼저 생겼거든요. 제가 영미법 전임을 맡게 되었을 때 일본에는 동경대의 다나카(田中英夫), 다카하시(高橋和之)로 이어지는 영미법의 전통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본을 통해 서양법학을 접하던 문화가 우리 세대를 마지막으로 끊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영국에 가서 그 부분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다카하시 교수와는 나중에 영국에서 만나서 의견을 교환한 적도 있었고요.

한인섭 : 교수님의 제자 중에 김종철 교수는 영국에 가서 공부를 했고, 이우영 교수, 박종현 교수나 김영진 박사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안경환 : 김종철 교수가 영국유학 준비작업을 하면서 다이시(Albert Dicey)의 <헌법학입문> 번역작업을 저와 같이 했어요. 헌법학의 고전이고, 누구나 헌법교과서에 한 번씩은 인용하는데, 지금도 그 책이 번역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인섭 : 그 시기에 영국 유학 갔던 분들이 좀 계셨나요?

김종철 : 그 전에는 주로 국제법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근관 교수, 이성덕 교수, 조시현 교수 같은 분들이 영국에서 국제법으로 학위를 하신 분들이죠. 그 외에는 방문학자나 연수 쪽이 많았어요. 국제법 이외의 학위의 경우에는 90년도 초반 2000년까지 시기에 집중되어서 그 시기에 저보다 앞서 사법계통으로 정상조 교수, 이중기 교수, 한기정 교수 등이, 기초법으로 이철우 교수, 김기창 교수 등이 있었어요.

한인섭 : 영국 갔다 오셔서, 법학지에 영국법제와 미국법제 비교 글을 일련의 논문

들로 실으셨죠?

안경환 : 네. 그렇습니다. 총 5편이고, 마지막 글은 김종철 교수와 함께 썼어요. 김 교수가 당시 유학 갔을 때 같이 썼죠. 그 다음에 영연방법에 대한 개론도 썼고요.

김종철 : 교수님께서 미국의 더글라스에 대한 관심을 쏟으신 것처럼, 영국의 경우는 독창적 법이론과 실무의 길을 개척한 데닝 경(Lord Alfred Denning)을 많이 소개해 주신 것도 기억할 만합니다.

한인섭 : 영국법 연구에 대한 안 교수님의 기여도나 영향을 좀 소개해 주시죠.

김종철 :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시까지만 해도 '영미법'이라고 해서 영국법과 미국법을 구별하지 않았는데, 교수님께서는 영국법과 미국법의 독자성을 강조하시면서 양자를 구별시켜주셨는데요, 그게 처음 배우는 후학들에게는 획기적인 시각이었고요. 다음에 미국법을 이해하기 위한 정신적 뿌리로서 영국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 나아가 단순히 법리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적 역사적 측면을 포함해서 공부하는 길을 만들어 주신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인섭 : 미국법과 영국법의 비교에 관한 연속 시리즈 글을 쓰실 때는 단행본 출간도 염두에 두셨나요?

안경환 : 그렇지는 않았어요. 어떤 목적으로 단행본을 내느냐는 문제인데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교과서인 단행본보다는 논문으로 써야 하고, 또 지극히 제한된 독자층을 생각할 때도 단행본으로 내는 게 힘든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나의 독창적인 글이 아니고, 아티야와 서머스의 연구를 토대로 업데이트 시킨데 불과하며, 전공자는 원저를 직접 보기 때문에 단행본으로 묶어서 낼 가치가 없다고 보았어요.

김종철 : 소개의 의미가 매우 컸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프레임을 아티야와 서머스 책에서 가져오셨기 때문에 더 공부할 사람은 원저를 참조하면 되리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독자적인 관점을 넣으신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니 제 소견으로는 단행본 내는 것도 좋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법, 영국법과 한국법의 관계〉

한인섭 : 안 교수님께서 쓰신 미국법 논문을 가지고 독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읽고 검토하고 해제작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독회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김종철 : 선생님의 평소 지론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정년기념논문집을 만들거나 거창한 기념행사를 극구 사양하셔서, 저희들이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의미를 챙길 수 있는 방안들 중에서 두 가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나는 선생님 미출간 저작을 전자화해서 공유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 논문 중에서 특히 학술적인 의미가 높은 것들에 대해서 독해하고 간단한 해제를 붙여서 책으로 묶어서 출간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6개월 정도 독회를 진행해서 원고를 20여 편으로 선별했고요, 현재 출판준비작업 중입니다. 올 하반기 선생님 퇴임하시면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우영 : 보충설명을 드리면, 해제에서는 앞부분에서 선생님 논문의 구성과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에, 그 논문이 우리 헌법학계에 미친 영향과 오늘날 우리 사회와 학계에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선생님의 논문에 대해 평석을 했습니다.

김종철 : 선별은 주로 미국헌법에 관한 것들로 했습니다. 그래서 독회에 참여를 희망하신 분들이 좀 더 계셨는데, 저희가 취지를 말씀드려서, 참여를 제한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선생님 퇴임 후에도 다른 독회나 세미나 모임을 계속 유지해서 선생님 생각이나 저희들이 새롭게 발전시킨 생각들을 공유하는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인섭 : 그러면 논문을 본격적으로 읽어보셨잖아요. 각 논문의 특징이나 장점이나 단점 등이 어때요? 각자 짧은 논평 한마디씩 해주세요.

김영진 : 저는 전반적으로 봤는데요, 지금 봐서도 아주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었고, 지금 되살릴 수 있는 학술적 의미나 가치를 캐치할 수 있었고,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감에 있어서 저한테 자극이 되는 부분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인섭 : 총평은 그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웃음)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본인이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깐, 제자된 입장의 논평을 한마디씩 해 주시죠.

박종현 : 저는 제가 박사 과정 때도 그랬고요, 선생님께서 사실 그 당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쁘시기도 했지만, 그 와중에 당시 제자들 공부모임이 있었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개인적으로 공부도 시키시고 과제도 내주시곤 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도 교수님에 대해 느낀 점은, 세간에서 느끼는 것처럼 교수님이 거대담론 좋아하시고 그런 것보다는 전형적인 법률가에 가깝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맡은 논문들은 조문에 대한 주해작업에 대한 논문들이 많았는데요. 그렇다보니 선생님께서 주해작업을 엄밀하고 엄정하게, 그러면서도 상당히 통합적으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출간된 최근 저작에 대한 얘기에서도 선생님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나왔지만, 선생님께서도 '통합적 인간상'에 대한 가치를 두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느낌을 논문에서도 많이 받았습니다. 엄정하면서도,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전체를 보시는 느낌이었거든요, 무엇보다 맥락을 잡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 방법론을 많이 강조하셨고, 전체적 흐름을 볼 줄 알면서도 세밀한 부분을 놓치지 않는 방법론을 스스로도 체화시켜야겠구나 하는 자극을 주는 논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장한 : 저는 프라이버시권 관련 논문들을 맡았는데요, 논문이 실린 곳이 법학 관련 학술지가 아니라 정보통신관련 논문집이었는데, 그렇다보니 주제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많은 내용을 보면서 선생님의 필력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생각도 듭니다. 저는 메디컬 프라이버시 부분을 해제로 쓰면서, 누가 관심을 가지고 볼까 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저의 정체성 관련해서 생각해보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보면서 의학에서 논문 쓰는 저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 느낌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법학의 특징인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독일법의 세밀한 개념론의 형태가 아니라 통괄적인 형태가 법학과 의학의 공통점인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보았어요. 이런 방법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분석적으로 쓰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을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상훈 : 저는 배심제와 관련 연방헌법에 대한 논문을 보았는데요, 역사적・현실적 필요에 대한 종합적 설명부분을 읽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2000년대에 나온 글인데,

아직 배심제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나온 선구적 논의라고 생각하는데요, 결론에서는 도입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 제시가 없어서 처음에는 아쉬웠는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실증적·경험적 접근법에서, 먼저 정확한 자료 제시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끔 그런 방법론을 취하곤 했거든요. 앞으로 저도 성급하게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정확한 입장을 전제로 한 걸음 나아가야겠다는 방법론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한인섭 : 영국법, 미국법 열심히 독해하고 해제까지 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코멘트까지 들으셨는데요, 원저자로서 소감은 어떠신지요?

안경환 : 사실 속으로 독회모임을 갖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로 중요한 글도 아닌데, 이것을 놓고 무슨 해제까지 하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글을 쓰고 나서 잊어버리고 싶은 게 자기 글인데, 다시 되살아나서 나한테 온다는 느낌이고, 그 책이 나오면 내가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공부할 때 체계를 갖추어 쓴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하고 싶은 공부도 많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러나 앞으로 한국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에 직·간접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었죠. 아까 얘기했듯이 영국법과 미국법이 어떻게 다르고, 적법절차가 뭐고, 법치주의가 뭐고, 배심제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우리 학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와 현실적으로 제도화할 때 유념할 점이 무엇일지 하는 생각은 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배심제 관련해서 특히 그렇고요, 특히 배심제 관련해서 글을 쓸 때,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칼럼과 연구논문은 내용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을 했지요. 논문의 경우에 당시 국내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제도들의 소개에 중점을 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글들은 그 주제에 대해 국내에서 첫 번째였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인섭 : 연구논문을 쓸 경우, 주제를 충실하게 다루면서도, 한국과의 관련성을 주제로 선정하지만, 성급하게 도입하자는 것은 아닌 것이죠?

안경환 : 성급하게 도입하자는 주장을 내가 경고한 적도 있어요. 운동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경우와는 달리, 학자는 성급한 입장을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현 : 헌법학자로서 헌법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저희 90년대 후반 학번들에게 강조하셨던 것이, 헌법관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다음에 그것으로 적용해 나가면서 나름의 헌법이론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을 것이지만, 저희 연배에서는 그 작업이 아직은 참 어려운 일인데요, 헌법을 공부할 때 헌법관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경환 : 제가 독일헌법에서 미국헌법으로 관심을 돌렸다고 얘기했는데요, 가령 국민주권, 민주주의라고 할 때 그것이 헌법에 얼마나 투철하게 반영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을 배울 때, '통치행위'나 '특별권력관계'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시민혁명을 통해 얻은 국민주권주의라는 것이 헌법의 모든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헌법철학이 있다면요, 국민주권을 선언하는 헌법 제1조가 최고 가치잖아요. 그리고 기본권 조항과 권력구조(저는 '통치구조'라는 용어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조항이 있지요. 모든 헌법교과서의 총론 부분에는 기본권과 권력구조의 관계는 주종관계 내지 목적과 수단관계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각론에는 이 대원칙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는 헌법전 전체를 관통하는 헌법철학이 투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배심제 도입관련 논의에서도 그런데요, 그것이 법관의 재판권 침해라고 권력분립차원에서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권과 권력구조의 총론적 설명과 관련지어 보면, 기본권이 주(主)고, 권력구조가 종(從)이라고 할 때, 배심제가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양자가 충돌한다면 응당 기본권이 우선할 것이고, 배심제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내실을 담보하고 국민의 사법주권의 실현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면 왜 법관의 재판권 침해라는 이유로 위헌이 됩니까?

그 다음에 개헌논의 할 때에도, 적어도 헌법학회에서는 개헌논의에 앞서 현재의 헌법으로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사유가 전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논의는 거의 제기되지 않아요.

자신의 헌법철학이 무엇인지, 헌법체계 속에 확고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기본권 중에서 사회권 논의가 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사회권은 헌법에서 장식적 성격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주권주의와 관련하여 볼 때 헌법총론에서의 믿음이 뒤의 각론 어디에 가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문제의식은 항상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권력구조가 왜 기본권과 충돌하며, 충돌하는 경우 왜 권력구조가 앞에 서는지에 대한 것이 항상 저의 불만이었습니다.

박종현 :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미국헌법주해나 헌법논문 작성하실 때 보면, 역사적 해석론을 강조하시고 맥락을 중시하는 해석법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역사학을 헌법학에 접목하는 분들과 교류하시고 그러는데, 가령 버클리(Berkeley)의 존 유(John Yoo) 교수 같은 분이요. 헌법을 역사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경환 : 민주주의라는 것이 보편적인 측면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적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가 "수출상품으로서의 미국헌법"(2002)이라는 글에서 썼는데요. 보편성과 특수성,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은 대체로 큰 문제없이 수용이 가능하고, 특수성에 관한 부분은 그것을 검증해야 수용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행복추구권 관련 논의를 보면, 이 권리가 당초 어떤 배경 하에 탄생한 것이고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그것을 바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쓴 글이 있습니다. 짧은 헌법전통 하에 18세기 배경을 가진 외국의 제도를 그냥 가져오는 것과 관련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역사적 헌법이라는 것이 하나는 시민정부라는 특성이 있고요, 시민이 가진 역사적 경험을 헌법에 반영한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대학원 시절에 독일헌법 코멘타르에서 확인하지 못해 불만이었습니다. 온갖 화려한 문구는 많지만, 치밀한 역사적, 논리적 검증 없이 기술되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미국에 비해서 약하더라고요. 제가 미국헌법에 더 매력을 느낀 이유는 방금 얘기한 듯이 실증적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논의의 역사가 오래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은 기본권에 관한 논의만 해도 19세기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독일은 2차대전 후에 비로소 헌법재판이 시행되었지요. 미국에서의 인민주권에 대한 믿음이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한 60년대 말, 70년대에 굉장한 절망과 회의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그랬죠.

박종현 : 학자로서의 삶에서 혹시 좌절, 회의의 순간은 있으셨는지요?

안경환 : 많지요. 하나는요, 법대 행정뿐만 아니라 서울대 전체 행정에 관여하면서도 느낀 것이 학문의 세부전공 간의 장벽이 너무 견고하여 소통되지 않는 문제였어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다른 사람들 간에 생각을 주고받는 것을 접하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를테면 여러 교수가 동시에 참여하는 공동강좌제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잘 안 됐어요. '법과 문학'도 처음 출발은 인문대, 사범대, 법대가 같이 함께 한다는 발상이었는데 안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지요. 법학의 경우도 그래요. 이를테면 노동법 교수와 회사법 교수가 함께 대면하여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른 생각을 얘기하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지식도 얻고 선택의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동법과 회사법 연구자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학풍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들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없었죠. 그렇다보니 지나치게 학문적 세분화가 견고해지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교과서의 의미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특히 거의 모든 사람이 단행본 교과서를 쓰는 관행에 대해서요. 교과서 집필은 한 마디로 "책 놓고 책쓰기"가 아니겠습니까? 교과서를 통한 학문 논쟁시대는 오래전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가 필요하면 한 대학에서 전공교수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과서만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학문 활동은 논문과 전문서를 통해서 하고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위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 학자로서 좌절이라면 좌절이었습니다.

박종현 : 독일 헌법의 추상적 도그마에 실망을 느끼시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미국 헌법학을 공부하실 때 갤러웨이 작업을 보면, 판사들의 가치 정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법이론보다는 정치적 상황이나 판사 개인적 성향이 중요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지는 않으시는지요?

안경환 : 정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판사가 지나치게 획일적인 것이 문제예요. 적어도 대법원이 정책법원이 되려면, 그 부분이 상당히 다양해져야겠지요. 사실 87년 헌법에서 대통령 직선제 못지않게 내가 더 신났던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공부한 것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요즘은 미국의 비교헌법학 교과서를 보면 한국 판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일찌감치 제가 나서서 우리나라 헌재판결들을 영문화 작업을 위해 경제기획원에 예산까지 확보해 놨는데, 당시 헌재가 형편이 안 되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에야 다 해결될 것이었는데, 제가

몇 년 앞서서 고민을 좀 했지요. 우리나라 정책재판으로서 헌재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법대 학장으로서〉

한인섭 : 화제를 좀 바꾸어서 학교에서 보직을 많이 하셨는데요. 학생담당학장보, 법대도서관장도 하시고, 다음에 본부 기획실장도 하시고, 법대 학장, 총장선거 출마도 하시고. 관련하여 몇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경환 : 에피소드 한 가지만 이야기할께요. 88년에 미국 최초의 여성대법관 샌드라 오코너(Sandra Day O'Connor)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미국헌법 제정 200주년 기념행사의 준비일을 맡았기에 미대사관과 문화원에 소통라인이 있었어요. 오코너 대법관이 우리 학장에게 할 질문지를 만들어 사전에 전달했습니다. 그분은 배재식 학장님을 만나자마자 대뜸 "당신네 학교에 여교수가 몇 명이냐?"고 묻더라고요. 학장께서 한 사람도 없다는 대답을 하기에 좀 당황스러웠겠지요. 또한 '천하제일 서울법대'라면서 선민의식을 부추기면서 사회적 책임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느꼈어요. 나라의 지도자를 키워내기에는 법대 커뮤니티가 너무 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적 구성을 다원화해 보자. 학생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법대 여교수 임용 주장이었어요.

학장시절에 동창회를 설득하여 조영래, 최인훈 두 동문에게 '자랑스런 서울법대 인상'을 수여했어요. 바깥세계에서 지명도가 높고 서울법대의 전형적 색깔과는 다른 업적으로 학교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높인 분들로 생각했어요. 전공 간의 벽을 트고 소통하자는 맥락과 같은 얘기입니다. 문을 닫고 있으면 밖에서는 안 열리지만, 안에서 빗장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문이 빨리 열리잖아요. 제 생각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문을 조금 일찍 여는데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과연 내가 거기에 그렇게 매달릴 것이었는가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지치기도 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불편해 하기도 했고.

서울대 전체 차원에서는 총장을 모시고 제도개혁을 통해 뭔가 해보려고 애썼습니다. 서울대 전체가 민주화의 길을 걸으면서 국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과 역동성의 제고가 중요한 화두가 되었어요. 또한 학과와 학문 사이의 장벽도 그렇지만 소외

된 학문분야에 대한 배려가 총장과 저의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가령 농과대학이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것이나 수의과 대학과 관련한 부분, 연건캠퍼스에서 의대 이외의 다른 학문분야에 대한 관심 등의 문제가 그렇지요. 또한 민주화의 과정에서도 서울대에는 극도로 교수중심의 문화가 뿌리박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상하관계가 분명한데 말이죠. 직원들의 복지나 발언권의 비중이 취약했어요. 기성회노조가 탄생할 때, 당시 제가 기획실장이었는데, 제가 노조를 막지 않고 찬성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의 민주화와 함께 서울대 자체의 내부적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총장선거에 나간 이유에도 이런 문제의식이 숨어있었습니다. 서울대와 다른 대학과의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대학과 선도적인 교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학의 위치나 발언권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또한 법학이 다른 학문들의 성과를 지적으로 종합하는 종합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로 전환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한인섭 : 다변화, 다양성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빗장을 굳게 닫은 상태에서는 문을 열기 어렵지만, 안에서 빗장을 여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법대 여성교수 임용 주장은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안경환 : 87년, 부임한 직후부터요. 그래서 오코너 대법관이 왔을 때 일부러 그런 질문을 유도하기도 했고요. 교수회의에서 발언한 적도 있어요. 인적 구성의 다원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늘 생각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 어른들은 진지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한인섭 : 한 15년 만에 여교수 임용이 이루어졌네요.

안경환 : 그렇죠. 한때는 제가 여학생 휴게실에 책도 기증하고 하면서 여교수의 채용을 청원해 보라고 부추기기도 했는데, 여학생들이 오히려 여교수 임용에 반대하더라고요. 여성인 이유만으로 뽑는 것은 오히려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논리도 일리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대학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거든요. 당시 대부분 여학생들은 교수보다는 판사를 지망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여교수에 대해 이해관계나 관심이 없기도 했어요. 사법시험은 성적 단일기준으로 한 능력 경쟁이 되니까요. 좀 더 큰 틀에서는 세상을

보지 못하더라고요. 법대에 여교수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것과 전혀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부추겨봤지만 잘 안 됐어요. (웃음)

한인섭 : 2002년도에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여성교수 임용과 관련해서 연판장 돌려서 480명 서명을 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죠?

안경환 : 몇 년 만에 인식이 달라졌던 거죠. 그건 여기 있는 한 교수의 역량이었기도 하고요.

김종철 : 여교수 정원이 쿼터제 생기기 전에 나온 거죠?

안경환 : 그것과는 별도로 생긴 것이죠. 그 제도를 만드는데 나도 좀 기여했어요. 그래서 법대 몫으로 세 사람이 배정된 것이지요.

한인섭 : 그런데 안에서 빗장을 열어준 이후에 실제로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안경환 : 그건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니고요. 어차피 될 일인데, 제가 몇 년 시차를 앞당기려고 너무 무리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악을 쓰지 않았더라도(웃음) 언젠가는 됐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그때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학장이 되겠다고 나선 이유도 그런 겁니다. 제도를 만들어서 해보려고요.

한인섭 : 당기는 사람 없으면 되겠어요? '어차피 될 일인데…'라는 말은 너무 편하게 하는 소리고요. 한 사람이 당기다가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당기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당기다 보면 안 당기면 이상하게 되는 분위기가 되고, 그래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종철 : 여성교원도 물론이지만 타교출신도 다양성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인섭 : 그것도 제도화되었긴 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경환 : 모든 인사는 만장일치였으니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지요. 인권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거의 모든 논의에서 만장일치를 추구했습니다. 대학에서 특히 인사 문제는 만장일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우리 대학도 인사에 관한 후유증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당사자 자신도 정확하게 모르는 배경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으로서 힘을 합치기 위해 마지막까지 설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을 달리한 참여자들, 새로운 것에 대한 불편함, 구체적 사람에 대한 낯설음, 이 모든 것을 함께 극복해야 되지요.

한인섭 : 당시 주도를 하셨다면, 주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안경환 : 저는 기관의 입장에서 생각했죠. 사적 감정은 오래 끌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받았던 느낌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떠나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기관의 입장에서 옳다고 생각했지만, 개인적으로 불편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불편하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내가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한 것일 뿐이죠.

김종철 : 역사적이거나 객관적 평가가 필요한데,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하고요. 물론 선생님의 개인적인 소회도 있으시겠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틀림없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사회가 그 방향으로 많이 변해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기여하신 것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인섭 : 보직을 맡을 때, 그저 대과(大過) 없이 지내는 게 좋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신 것 같아요. 밀고 나가자는 주의이신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하면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은 하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안경환 : 공직이 무엇인가, 제 생각에서 볼 때는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적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공적 영역에서 봉사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집의 좀스런 가훈을 어긴 '벼슬하는'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공직을 맡을 때는 적어도 그 기관의 장으로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은 하고 있었지요.

한인섭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안경환 : 한 예로 법대 도서관장에 취임하면서 도서관은 단순한 독서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전에는 고시를 준비하는 졸업생들이 대부분의 좌석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도서관은 연구자료를 이용하는 곳이다, 그래서 도서 확충하고 출입에 있어서 고시생의 출입을 제한하고, 도서 확충을 위한 도서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창회 설득하는 작업도 했지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후일 신림동 고시촌이 융성하게 된 중요한 계기의 하나가 안 교수가 고시생들을 축출한 사건이었다고요.

이동민 : 기부에 관해 말씀해 주시죠.

안경환 : 그 전까지는 서울법대에 대한 기부는 특정 명망가나 국가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일반기부는 거의 없었는데요. 외국유학을 다녀온 졸업생도 외국의 대학에는 기부하면서 정작 모교에는 거의 기부하지 않았어요. 동창회 졸업생들에게 그런 문화를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동창생은 자신의 학생 시절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복고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교를 현재의 다른 학교나 외국의 대학의 상황과 비교해야 하는데, 동창회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거든요. 그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도화는 안 되었지만, 일단 학생이 졸업하는 순간부터, 단돈 몇천 원이라도 기부하도록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장할 때 법학발전재단도 만들어서, 동문과 독지가의 폭넓은 기부를 얻고자 했습니다.

한인섭 : 법학발전재단을 만들어서 동문들과 일반인들의 기부범위를 넓히자, 대형 기부가 아니라 일상적 제도적 실천으로 연결되도록,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나 성과가 있다면요?

안경환 : 심지어는 가수 태진아, 주현미를 내세워 모금 이벤트도 열었어요. 법학발전재단 만들고 동문후원의 밤 행사까지 가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동안 상당한 기금을 확보했는데, 큰 액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장직 떠날 때 대학에 기금을 좀 남기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한인섭 : 본부 보직 기획실장을 하셨는데요. 그때는 서울대발전, 기부, 연구공원, 서울대학교법 등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지금 기억에 남는 일들 좀 말씀해 주시죠.

안경환 : 총장이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만 2년을 못했죠. 당시 정치상황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서울대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서울대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다음으로 남북문제도 생각했습니다. 서울대 캠퍼스 일부를 이전할 때 남쪽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북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DMZ 인근 지역에 후보지역도 살피고 현지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당시 청와대비서실과 경기도지사와 논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서 서울대 50주년 행사를 연변대를 중간에 끼워 김일성대학과 공동으로 해볼 수 없을까 모색도 해봤어요. 잘 안 되었지만요. 그런 식으로 남북한과 통일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말이죠. 이수성 총장님께서 스케일도 크시고 한데 너무 빨리 떠나시게 돼서 안됐지요. 다음으로 작은 일로는 정신문화연구원을 서울대 인문대와 통합하려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관 사이에 합의를 보고, 교육부장관도 동의하여 실무작업도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어요. 구체적으로 원장의 인사문제까지도 거론되고 했는데, 우발적 사고로 좌초되었어요. 김숙희 장관께서 국방대학원 강연에 가셔서 "월남 용병"얘기를 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장관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후임 장관은 연세대 총장하신 분인데, 이분은 모든 것을 연세대 기준으로 서울대를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서울대의 직원 수가 연세대의 몇 배다, 이런 식으로. 그게 당시 총장께서 국무총리를 맡게 된 숨은 배경 중 하나였습니다. 총리에 취임하면서 교육부 장관을 교체했지요. 서울대의 특수한 지위, 법적 보호, 남북한 관계에서의 서울대의 역할 등을 총장께서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계셨고, 제가 아이디어도 내고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그랬는데, 총장이 떠나시고 나니까, 그런 역할 수행이 어렵게 되었고요. 후임 총장님은 부총장으로 모시고 있던 분이지만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비켜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저도 그만두게 되었죠. 그게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한인섭 : 당시 '서울대 법인'이라는 말이 있었나요?

안경환 : 우리 대학 차원에서는 아니었지요. 교육부의 장기 정책차원으로 거론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죠. 그걸 차단하기 위해 서울대법을 들고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

한인섭 : 현재 법인이랑 당시 구상은 많이 다르죠? 혹시 지금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안경환 : (웃음) 이제는 마음을 비웠지만요. 우리가 그때 생각하던 방향이 아니니까요.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가 나라 전체의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고한 기본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이후 총장들은 실무적 어프로치를 더 중시하시는 것 같고요. 시대가 달라졌고 서울대의 위상이 달라졌기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목전의 현안과 단기이익에 치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당시 생각했던 서울대의 모습과 지금 법인은 많이 다르죠.

한인섭 : 학장시절 얘기를 할까요?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인적 구성의 다변화, 기부 외에 에피소드 좀 말씀해주시죠.

안경환 : 학장하면서 동창회 문제가 기억에 남네요. 서울법대동창회가 가지는 상징 의미에 대해서요. 그때는 동창회 임원들이 대부분이 칠십이 넘은 분들이셨어요. 정기총회는 어김없이 플라자 호텔에서 여는데 동숭동에서 제일 가깝다는 심리적 동기도 있는 것 같아요. 동숭동 세대와 관악 세대 간의 의식의 차이가 매우 커요. 나도 동숭동 세대에 속하지만 젊은 학장이 가면 몇 회 졸업생이냐고 물어보고 새까만 후배라는 생각만 하지 기관으로서의 모교 학장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지 않아요. 매년 수상하는 '자랑스런 서울법대인상'도 동창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법대 학장은 형식상 추천위원의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어요. 해마다 오로지 연공서열과 직위를 기준으로 선정하더군요. 내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여 갈등이 좀 있었죠. 정 그러면 동창회와 별도로 법대에서 독자적으로 상을 만들겠다고 협박도 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 작가 최인훈과 조영래가 선정된 것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최인훈이 누군지 모르는 분도 있었고, 조영래는 '죽었어도 너무 젊다'라는 것이 반대이유였어요. 다행스럽게 당시 동창회장 이상혁 변호사님이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기에 파국을 면했어요. 그분은 동창회의 상징적인 인물인데다 사형폐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신 분이기에 달리 볼 줄 아셨어요. 원로 동창 중에 가장 고마운 분이고, 시대의 흐름을 잘 아는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최종길 기념홀'도 만들고 '조영래 기념홀'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 모든 과정이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명분도 있었고, 옳은 길이었기 때문에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동창회의 일부

원로들께서는 저를 학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심지어는 제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다고 하는 뒷이야기였어요.

한인섭 : 동창이나, 교수, 학생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어떠셨나요?

안경환 : 학생들의 평가는 나야 잘 모르지요. (웃음) 그때 학생징계는 없었지요. 그때도 본부에서 징계요구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 법대가 선도적 기준을 만들었어요. 징계 대신 사회봉사를 만들었죠. 그리고 신임교수로 많은 분들이 오셨죠. 그중 한 분이 떠나서 마음속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학장선거에서 한 번 낙선하고 재수 끝에 자리를 맡았기에 나름대로 왜 내가 이 자리에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나름대로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영진 : 제가 당시 학생이었는데요. 안 교수님께서 학장님이 되시고 나서는 전형적 교장선생님 모델에서 발로 뛰는 비즈니스 식의 모델로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종현 : 당시 학장하실 때, 장애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시고 관련 시설공사를 하신 것은 학생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안경환 : 인적구성의 다원화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장애인이 못 들어올 이유가 없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요.

김종철 : 국제교류는 없었습니까?

안경환 : 그때 했죠. 외국인 교수를 모실 수 있도록 펀딩을 했고, 거기에 아시아 쪽을 넣은 것이 처음이었어요. 중국 교수들도 오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시아 국립대 법대 연합회(ASLI)'가 싱가폴에서 출범했을 때, 참여했었죠.

한인섭 : 그 전체가 다양성(diversity)이란 키워드와 연결이 되네요.

안경환 : 그렇죠. 서울대가 국내 제일 대학이라는데 너무 안주하고 있었어요. 나라가 컸는데도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적었고,

선진국으로부터 배운다는 생각만 있었지, 우리가 앞서 나아가 베푼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이라면 베풀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시아 쪽이고, 중국이고 그래요.

〈사회정의연구실천모임, 경실련, 참여연대〉

한인섭 : 학내에서 80년대 후반에 '사회정의연구실천모임'을 만들고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바깥으로는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창립과 운영에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안경환 : 서울대 교수들 중에서 처음으로 참여범위를 넓혀서 대(對)사회발언을 하자고 한 것이 89년이었죠. 원로그룹 중에서 법대 출신의 권태준(환경대학원) 교수님, 김광웅(행정대학원) 교수님이 있었고요. 중견 간사급에 속한 사람들이 박세일, 한상진, 황경식 그리고 저도 일정한 역할을 했고요. 서울대 역사상 처음으로 10여 개 단과대학의 교수 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비판>이라는 잡지도 내고 편집위원도 하고 그랬어요.

그 시점에서 경실련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치적 민주화는 달성했는데, 몇 년에 한 번씩인 선거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상적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감시·비판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만들어진 것이 경실련이죠. 경실련은 대학 학번으로 치면 서울대 경제학과 66학번들이 핵심이 되었어요. 나도 같은 학번이지요. 우리가 학부 2학년 때 상대에 조순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 전까지는 경제학 공부를 일본을 통해서만 했는데, 조순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미국이론을 가지고 왔잖아요. 참신했습니다. 그래서 법대에서도 많이 몰려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박세일 교수였습니다. 그 멤버들이 새문안교회에 관련된 사람들과 합쳐서 준비모임을 통해서 경실련이 탄생을 했거든요. 나도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 서경석 목사 이런 분들하고. <경제정의>라는 잡지의 편집위원도 했어요. 편집장은 처음에는 연세대 안병영 교수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깐, 정책제안 중심의 경제전문가들이 많이 모였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쪽은 법률가들이 주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때쯤 해서 박원순 변호사가 찾아

왔어요. 박 변호사를 조영래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조영래 변호사가 죽고 난 이후에 박 변호사가 런던에 유학 오겠다고 해서 그때 만났죠.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조 변호사가 남겨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지요. 박원순 변호사가 와서 참여연대 같이 하자고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알량한 이름 하나 거는 거 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도 굳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참여연대의 결성에 관여했어요.

참여를 수락하면서 박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취지는 좋은데, 재정을 어떻게 하실 거냐? 10여 명의 젊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으면, 그분들의 열정을 어떻게 먹여 살릴거냐?"고 물어봤더니 "뭐,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라고 답하더라고요. 박원순 특유의 겸손함과 낙관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깐, 그분이 자기 집을 팔았더라고요. 그 돈으로 초창기 참여연대의 살림에 충당했지요. 그때 내가 제안한 것이 무엇보다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직장'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아무리 적어도 월급을 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 방향으로 조언을 했고, 거기에 동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열의에 차있는 젊은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고, 그때 나는 그냥 붙어있는 셈이었죠.

한인섭 :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안경환 : 그게 94년입니다. 창립하면서 나이에 맞추어서 적당히 자리를 하나 받았습니다. (웃음) 집행위원장이었어요. 학계에 있는 분들을 많이 참여시키도록 애도 좀 썼지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웃음) 조직 만들고 사람 모으고 이런 일을 좀 하고, 다니면서 설득도 좀 하고 돈도 좀 모아보려고 했지만요. 창립총회에 이회창 총리가 오셨는데 내가 초청장을 들고 갔습니다. 이 총리는 내가 영국에서 데닝 경을 공부하면서 편지를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87년에 우리대학에서 강연하시는데, 그때부터 사법적극주의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주목하게 되었지요. 그분도 저를 기특하게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학교에 있고 나이도 좀 있고 하니, 아무래도 시대흐름에 좀 뒤처졌어요. 현장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다 싶은 일의 경우에 한 번씩 제동을 걸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결정적인 사건이 2000년 낙천낙선운동하던 총선시민연대인데요. 그 일에 나는 반대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 시민운동의 도덕적

권위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박상증 대표께서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이미 다 합의되고 사실상 결정된 사항에 제동을 건 셈이었어요. 반면, '소액주주운동', 그건 아주 좋았어요. 나도 힘껏 응원했어요.

나는 대학에 있는 사람이라 현장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데모 같은 것은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속할 정도로 거기에는 거리를 둔 사람이었어요. 기본 성향에도 맞지 않고 그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바쁘고 할 일도 많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가 탄생할 때도 그 추운데 밤에 농성하고 데모할 때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좀 비겁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은 주되 몸은 좀 아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음이 가있는 곳에는 굳이 몸이 안 가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현장 데모는 안 했죠. 교수라서 그런 점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이 정도 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해서 빠져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총선시민연대도 그래요. 그때 신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 '승리'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 싶었어요. 예를 들면 그 운동을 통해서 전라도 지역에서 누구를, 경상도 지역에서 누구를 떨어뜨리지 못했잖아요. 경인지역에서 몇 사람 타겟으로 했던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민운동의 도덕성에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일주일간 반대를 했더니 간부 한 명이 나한테 와서 독대를 신청하더라고요. 그의 얘기를 듣고 내가 설득 당한거죠. 설득이라기보다는 포기한 거지요. 그러고 나서 세상을 '읽는' 방법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절감했어요. 옛날에 조영래 변호사의 경우는 우리가 미처 못 보던 현상을 예견하고 사명감 있게 일하니깐 설득을 당합니다. 그 이후로도 현장 운동가들의 감각은 나의 감각과 많이 차이가 나더군요. '역시 대학 선생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보고 대표를 하라고 했지만 사양했어요. 이제 이 단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박원순 변호사가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공익모금활동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 거여서, 국가인권위원회 갈 때까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배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인섭 :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 거기서 뭘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안경환 : 그 부분은 대담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좌우지간 인권이다>라는 책에 다 쓰여 있는데요. 시대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피할 수 없어서 했다는 게 옳겠지요. 제가 학장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강금실 법무장관이 임명되었지요. 개혁 성향의 젊은 여성 법조인이 장관이 되는 것이 좋은 일이기도 해서 모교에서 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사법개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장관 발령 나기 전에 학교에 한번 초청했어요.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게 간접적으로 참여정부에 관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나는 그때까지도 학교 밖의 자리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나서서 한 적은 물론이고 간접적으로도 한 적도 없었습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공직 후보로 들러리 섰던 적은 한두 번 있었습니다. 학장을 거치면서 교내에서 총장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잘 안되었지요. 2006년 5월, 총장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말하자면 학교 안에서의 공적인 성격의 일거리가 없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때 정부에서 인권위원장을 하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고민을 조금 했지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 일은 좋은 일이니 맡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고, 가족도 동의했어요. 무엇보다도 인권위가 독립된 기관이라는 점과, 외형적으로 볼 때 제가 직접적으로 일한 적은 없었지만 그 분야에 전혀 문외한은 아니었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력도 이 자리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게 2006년 10월이죠.

이우영 : 임기 동안 선생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구상이 있으셨는데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한 가지만 이 기회에 말씀해 주세요.

안경환 : 탄생 초기에 인권위는 저의 인권의식 수준보다 많이 앞서나가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막혀있던 언로가 터지자 많은 국민의 다양한 인권욕구가 표출되었고, 신생기관의 의욕도 넘쳤던 거지요. 그로 인해서 대중의 반발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도적으로 조금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내부갈등이 심했던 걸로 알려져 있었어요. 내가 가진 생각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무엇보다도 내부갈등을 잠재워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내부갈등이 증폭돼서 외부에 알려지고, 비공개회의 내용이 즉시 언론에 중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임 위원장이 그만 둔 것도 내부갈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내부갈등을 수습해서 기관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그 다음에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이미 자랑할 만한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인권상황이 몇 개의 이슈를 제외하고는 선진국 수준이었어요. 다른 나라 국가인권위원회랑 비교해보니깐 조직이나 재원이 전혀 나쁘지 않았어요. 국제적 리더십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임명장을 받을 때 관련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분을 정식으로 대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내가 혼자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에 30분 동안 같이 차를 마실 시간이 있었어요. 나는 말할 내용을 따로 준비해 가지고 갔어요. 대통령께서 정치적 통제는 안할 터이니 알아서 잘 해보라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잠시 말씀을 멈추실 때,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하니까, "해보세요"라고 하시면서 "좌우 물릴까요?"라고 하길래, 아니라고 하고, "저는 정치적 입장에 관계없이 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니깐 이분이 표정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곧 이어 "저는 국내 입장보다는 우리나라의 지위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건 좋은 일입니다"라면서 표정이 좀 풀어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요청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저는 국제적 리더십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 부분은 자신이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해놓은 일들을 보니깐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07년 3월 ICC(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었고, 3년 후에는 우리가 의장국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캐나다 의장과 한 팀이 되서 일을 했지요.

한편 인권위를 내부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임명될 당시 한나라당의 추천을 받은 분으로 언론계 출신 원로가 계셨는데 그동안 쌓인 소외감이 컸어요. 그 부분을 제가 신경을 특별히 많이 썼지요. 굳이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께는 몸과 마음을 좀 덜 주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직원들 중에도 내부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상대적으로 직업공무원 분들이 시민운동 출신들과 잘 융화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지요. 초기 출범할 때 아무래도 시민운동 출신들이 주도하는 경향이 있었다보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을 균형있게 챙겨주면서 조직의 균형을 좀 잡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세웠죠.

한인섭 : 총 2년 9개월 동안 순항하시면서 잘 이끌어 가셨습니까?

안경환 : 처음에, 적어도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깊이 관여를 하지 않았고, 또 노 대통령께서 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셨어요. 원래 인권위는 대통령과 달리 생각하는 거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이 훨씬 쉬웠어요.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지요. 제 생각에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인권위는 정치적 중립기관이니까 계속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대선 끝나고 인수위 시절부터 벌써 인권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무력화시키는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나는 정부를 설득하려다 실패했고, 그래서 저항하면서 버티다가 마지막까지 반전을 노려보다가 잘 안되었죠. (웃음) 우선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했지요.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인권위가 독립기관이라는 대전제를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수위 시절부터 이 기관을 다른 위원회와 통합시키려 했고, 그렇게 안 되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려다가 그것도 안 되었지요. 그때부터 내 자리는 매우 힘들었어요. 정부 출범 직후에 3개월 동안 이어진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인권위가 경찰의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의견을 내자 노골적인 보복조치가 따랐지요.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연이어 실시되고 마지막에는 대통령령을 통과시켜 인권위의 조직을 21퍼센트 축소시켰지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죠.

한인섭 : 그러면 떠나는 과정은 어떠셨나요? 언제부터 그만두시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안경환 : 2009년 3월 30일에 대통령령이 통과되면서 사표를 내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상임위원들을 포함한 간부들이 집으로 찾아와서는 그럼 누가 사태를 수습하느냐며, 절더러 수습해주고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간곡하게 말리더군요.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 잠시 유보했었지요. 21%의 직원을 자르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야 손 털고 빠지면 속말로 폼은 나겠지만. 그래서 일단 수습작업을 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두고, 마지막 반전을 도모했지요. 내가 물러나더라도 새 위원장이 ICC 의장에 선출될 수 있는 준비를 착실히 해두면 나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새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잘랐던 조직도 원상 복귀시킬 명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한 것이죠. 나름대로 이런 계산으로 ICC의 관련자들과 협의도 하고 청와대와도 상의했어요. 심지어는 내

후임자로 누가 국제사회에 통할 수 있는 적임자냐고 묻길래 추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심 잘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결과는 대통령 주변 분들에게도 뜻밖의 인물이 새 위원장이 되었어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ICC 의장국도 사라져 버렸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직접 만났으면 설득하든지 최소한 득실을 판단할 자료를 드릴 자신이 있었는데, 한 번도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별의 별 수단을 다 써봤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모든 언로가 다 막혔었어요. 그 점을 제일 아쉽게 생각하지요. 만약 ICC 의장국이 되었더라면 이명박 정부와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아쉬웠지요.

한인섭 : 대통령의 의지와 식견이 없이는 독립기구라 할지라도 제대로 유지・운영되기가 어려운 모양이죠?

안경환 :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국민에게 다소 생소한 기관이었잖아요. 그런 독립기관에 대해서 정부 내의 사람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삼부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구가 존재하느냐고, 한때 유명한 헌법학자 중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헌적 기관이라고 주장하신 분도 계실 정도였으니까요. 인권위는 93년 유엔총회 권고사항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이게 제대로 운영되려면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해요. 첫째, 행정부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적어도 참아주거나 하고, 두 번째로는 인권위 스스로 우리는 독립기관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사명감이 있어야 해요. 독립의 대가는 고립이거든요. 모든 정부기관이 인권위를 싫어합니다. 이걸 이겨내는 게 사명감과 자부심입니다. 세 번째로, 인권위의 활동으로 누가 혜택을 보느냐하면 국민이거든요. 결국 국민이 그런 상황에서 관심을 가지고 인권위를 지켜줘야 하는데요. 처음 7년 동안은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앞의 두 가지 조건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 다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세 가지 다 안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철 : 사회활동과 관련해서 지난 대선에 관여하셨잖아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것인지요?

안경환 : 일종의 정치적인 활동인 셈인데요. 대학에 재직하면서 직, 간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정년이 몇

달 남았을 뿐인데, 대선은 자주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원칙 지켰으면 됐지 않았나는 생각도 있었고 (웃음) 무엇보다 그 절박한 순간에서 제 이름만이라도 필요하다고 졸라대니까 넘어간 거지요. 제가 이명박 정부를 경험하고 나면서 이 정부가 연장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근혜 씨 개인에 대한 편견은 없습니다. 오히려 없기 때문에 주변의 비난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의 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연좌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 받은 세대입니까? 그것도 다른 형태의 정치적인 연좌제잖아요? 박근혜 씨가 개인적인 정치적 역량이 없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야지, 왜 누구의 딸이라 안 된다고 그러느냐고 말하다 하루 종일 야단맞았거든요. (웃음) 그러나 박근혜 씨와 이명박 대통령은 지지세력이 겹쳐요. 그래서 집권이 연장되면 한국사회가 더 분열되고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젊은 청년에게 더 힘든 날이 예상되더라고요.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해마다 젊은 대학생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를 경험해보니 정권이 연장되면 청년들이 더 힘들어지고 무력해지고 그래서 더 절망하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박근혜 씨를 지지하는 쪽은 연령적으로 대부분 과거의 세대들이고, 상대적으로 이쪽은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전향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다면 대학에 몸담았던 사람의 책임감 때문에서라도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쪽으로 뭔가 기여할 수 있도록 이름이라도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곧 대학을 떠날 사람으로서 마지막 사명감으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김장한 :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신문에 난 기사를 봤는데, 박근혜 씨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하신 내용으로 기사가 실렸던데요.

안경환 : 뭐든지 신문에서 인용할 때면 그런 부분만 나오지요. 박근혜 씨 때문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지지하는 쪽 정권이 이어지면요, 결국은 그렇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지요. 그때는 누구라도 박근혜 씨를 이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철수 씨나 문재인 씨 아무나. 그래서 단일화에 기여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바깥에 있어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당시에 안철수 씨 쪽에서 내건 '새 정치'의 의제가 민주당도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개혁의 대상이 될 구식정당이라는 분위기였으니까, 민주당 후보의 지원자로서 민주당의 개혁을 전향적으로 주문하는 것이 명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인섭 : 대학으로 돌아오시니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안경환 : 우선 제일 큰 변화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나는 원래 이 제도의 강력한 지지자였지만 실제로 도입된 후의 운영과 방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당초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도기적인 현상 같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내가 학교에 필요한 일이 뭐겠는가 생각해보면, 이미 내 역할이 끝나지 않았나 싶어서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은 환영받지 못할 것 같고, 잘 끼워주지도 않을 것 같고요. (웃음)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마지막까지 수업을 챙기고 학생들과 만나서 밥 먹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글도 좀 쓰면서.

〈사랑과 사상의 거리 재기〉

한인섭 : 앞으로 정년퇴임하실 때까지 두 달 동안 무엇을 제일 하고 싶으십니까?

안경환 : 그걸 내놓고 말해야 돼요? (웃음)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있는데, 앞서 말한 더글라스의 전기예요. 젊을 때는 그의 사법철학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때는 좋은 면만 보게 되었죠. 나중에 그 사람의 약한 면, 실망스런 면까지 보니 '인간'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깐 관념적으로 미화된 존재가 아니라 현실의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수많은 작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법률가는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려는 노력을 통해 세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분을 조명하는 글을 한번 써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30년 전의 자료를 다시 뒤지고, 재작년부터 미국에 그분이 어린 시절에 살던 곳을 찾아갔고, 그 후에 나온 자료들도 업데이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책이 연말쯤 해서 나오면, 내 나름대로의 왜 내가 법학 교수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지요.

한인섭 : 미국 유학 당시에 더글라스에 관해서 쓰신 책이름이 <미국법의 이론적 조명>(1986)인데, 이번에 쓰고 계신 책이 다 완성이 되면 책 제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윌리엄 더글라스의 법사상', 이런 건 아니죠?

안경환 : 그런 것은 아니죠. '사랑과 사상의 거리재기'라고 할까요. (웃음) 제가 '법과 문학'을 시작하면서 던진 화두가 아닙니까? 제가 청년시절부터 글을 읽을 때 내 독서의 본질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결국 '사랑과 사상의 거리재기'였더라고요. '사랑이 담기지 않은 사상은 메마르고, 사상이 빠진 사랑은 경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세대, 이병주 세대의 문학적 스케일과 취향이 얼마간 제게도 남아 있지요. 그런 점에서 사회과학만 공부한 세대하고는 좀 다른 식인 것 같아요. 낭만이랄까요? 소모적인 낭만과 퇴폐적인 낭만을 포함해서, 그 부분을 좀 즐기니까요. 더글라스의 그런 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그분이 가지고 있던 정신적 불안 같은 것이 보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던가도 관심사이죠. 그는 가정사가 대단히 불안했던 사람이었고, 사회적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법률가로서 사회에 기여했던가, 그게 핵심이 될 겁니다.

한인섭 : '사랑이 담기지 않은 사상은 메마르고, 사상이 빠진 사랑은 경박하다', 이렇게 멋있는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안경환 : 제가 한 말입니다. (일동 웃음)

한인섭 : 그 외에 가까운 장래에 집중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다면요?

안경환 : 어떤 일이든지 제가 필요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건 생각해 봐야겠지요. 강의 요청이 들어온다면 그것도 생각해봐야 하고 조만간에 국제학술대회 가서 발표하기로 한 것도 몇 건 있어요. 주로 인권 관련된 것인데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 저라도 해야지요. 근래에 타이완 학술지에 한국인권위원회 10년을 조망한 한 짧은 영문 글이 실렸어요. 인권위는 준국제기구이니까 국제사회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강연하고 쓴 글입니다.

이우영 : 마지막으로 후학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경환 : 상식적인 말이지만요, 학문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정리해서 후세인의 판단의 자료로 만들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후학들이 공부하고 극복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능력도 모자라고 치밀하지도 못했지만, 제 나름으로 비교적 솔직하게 글을 쓴 편이었습니다. 가족얘기도 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하는 일이 있지요. 그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있거든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법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사명이잖아요. 이 둘 사이에 조화를 잘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수라는 직업은요, 세상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직업이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무관심을 유지하기도 좋은 직업이거든요. 어느 쪽이 좋다 그르다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사회에 도움이 될 겁니다.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는 스스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경우에는, 법학교수가 되고 난 뒤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시점에서 내가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의도적으로 의식하면서 살아온 편입니다. 이제는 그 짐을 벗으니까 좀 더 자유롭게 제 스타일대로 살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일동 : 선생님! 감사합니다.